

201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리걸클리닉 지원) 사업
정책과제 결과보고서

한국 리걸클리닉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2013.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한국 리걸클리닉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월

책임연구원 : 정 영 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최 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재 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3
제4절 활용방안	3
제2장 리걸클리닉 일반론	4
제1절 서론	4
제2절 리걸클리닉의 개념과 역사	4
I. 리걸클리닉의 중요성	4
1. 로스쿨 제도와 리걸클리닉	4
2. 법학교육방법 개혁과 리걸클리닉	5
II. 리걸클리닉의 개념	9
1. 유사 개념과의 구별	10
(1) 리걸클리닉과 임상법학	10
(2) 엑스텐션쉽과 인턴쉽	10
(3) 로이어링 또는 시뮬레이션	11
(4) 리걸클리닉 개념의 다양성	12
2. 리걸클리닉의 이해	14

III. 리걸클리닉 교육의 역사 및 각 국에서의 운영현황	16
1. 미국 리걸클리닉 교육의 역사	16
2. 다른 나라에서 리걸클리닉의 발전	20
(1) 일반론	20
(2) 중국	20
(3) 일본	21
(4) 독일	25
3. 각 국에서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	25
(1) 미국	25
(2) 중국	36
(3) 일본	42
(4) 독일	47
 제3절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내용 등	 50
I. 서론	50
II. 리걸클리닉의 목표	50
1. 체험을 통한 학습성과의 증진	50
2. 사회정의 실현 및 지역사회 봉사	51
3. 소결	52
III. 리걸클리닉 내용	53
IV.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	55
V. 리걸클리닉 수업의 구조	56

제3장 한국 리걸클리닉 운영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60
제1절 서론	60
제2절 리걸클리닉 운영현황(설문조사)	60
제3절 리걸클리닉 운영상의 문제점	117
I. 문제의 제기	117
II. 리걸클리닉 운영상의 문제점	117
1. 졸업요건 또는 필수과목으로의 채택 여부	117
2. 리걸클리닉의 전문화 문제	119
3.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119
4. 재정지원의 문제	121
5. 그 외의 문제	122
제4절 소결	123
제4장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124
제1절 서론	124
제2절 한국 리걸클리닉의 특별한 사정	125
I. 서론	125
II. 한국의 특별한 사정	126
1. 구성원의 연대의식이 높음	126
2. 교육열이 유난히 높다는 점	126

3. 법률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127
4. 국가발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	128
Ⅲ. 소결	128
제3절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128
Ⅰ. 서론	128
Ⅱ.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129
1.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확대 및 강화	129
2. 리걸클리닉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130
3. 리걸클리닉 교육의 졸업요건 및 필수과목으로 채택요망	131
4. 국가의 재정지원의 강화	132
5. 리걸클리닉의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계속 유지	134
6. 가칭 리걸클리닉 협회의 설립 필요성	135
7. 기타	136
Ⅲ. 소결	136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3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09년 3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체제가 출범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인간성에 기초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3년 동안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성을 동시에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종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과대학에서 이론교육에 치중하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 3년 동안에 이론과 실무 교육을 동시에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법조윤리),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교과 내용, 실시방법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따라서 위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위 “실습과정”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 클리니컬 리걸 에듀케이션(Clinical Legal Education)으로, 일본에서는 리걸클리닉 또는 임상 법학(臨床法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상법무실습 또는 리걸클리닉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을 통상 리걸클리닉으로 칭하겠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에서 제1장은 서론으로 전체 방향을 잡고, 제2장은 리걸클리닉의 일반론으로 리걸클리닉의 개념과 역사,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운영현황, 리걸클리닉 교육의 실제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을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이에 응답한 24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다. 우리 리걸클리닉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이론 및 우리 리걸클리닉 교육의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한국적 법률교육의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 제5장에서는 전체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의 일반적 개념과 역사,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의 리걸클리닉 운영실태 등을 교과서, 논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국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자료, 현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리걸클리닉의 큰 방향을 잡고, 현재 우리의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우리의 리걸클리닉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실시 3년 간의 리걸클리닉 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 핵심인 리걸클리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리걸클리닉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장점으로 파악되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리걸클리닉 교육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실무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육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리걸클리닉을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리걸클리닉의 기본개념에 기초하면서도 한국적 교육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리걸클리닉의 기초를 재정립하고, 향후 한국 법학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4절 활용방안

본 연구보고서의 최종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리걸클리닉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또한 법학교육의 실무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교육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리걸클리닉의 이론적 검토를 겸하고 있으므로 학술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장 리걸클리닉 일반론

제1절 서론¹⁾

우선 리걸클리닉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2절에서 리걸클리닉의 개념과 역사, 각국의 리걸클리닉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이것에 기초하여 리걸클리닉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리걸클리닉의 목표, 담당교원, 내용, 수업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소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제2절 리걸클리닉의 개념과 역사

I. 리걸클리닉의 중요성

1. 로스쿨 제도와 리걸클리닉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실습과정의 하나로, 새로운 법학교육의 핵심에 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출범하였다.²⁾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을 실시하는 “법조인의 능력”은

1) 본장의 제2절과 제3절의 내용은 문재완, 정한중, 김인회, 「로스쿨 실습과정」, 한국학술정보 [주], 2011.에서 상당부분 차용하여 보완, 발전시킨 것임

이론 및 실정법에 대한 지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기존의 법조인 양성체계에서는 이론 및 기본 실정법을 먼저 배운 후 실무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에 관한 지식과 법에 관한 기술을 함께 교육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법조인의 능력은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하여야 하는 실무교과목으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명시한 이유도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이러한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리걸클리닉은 그중 ‘실습과정’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법조실무의 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시키고, 실무뿐 아니라 법학이론에 대한 학습동기를 강력히 부여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의 하나로 알려졌다.

2. 법학교육방법 개혁과 리걸클리닉

법학교육에서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또는 clinical legal education)을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리걸클리닉 교육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와 같은 국제기구도 리걸클리닉 교육이 법의 지배(rule of law) 및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인도, 베트남, 태국, 몽고, 소말리아, 벨라루스 등 상대적으로 법의 지배가 미흡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을 늦게 시작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이 본격적인 리걸클리닉 교육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 아직 리걸클리닉 교육의 초기 단계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리걸클리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5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참조.

미국이 리걸클리닉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법학교육방법을 개혁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케이스 분석 방법(Socratic case method)을 중시하고 교실 강의를 중시하였다. 미국 변호사협회(ABA) 로스쿨 인가기준 301(a)에 따르면, 로스쿨 교육은 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에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로스쿨은 학생에게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skills)과 가치(values)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학생에게 기술과 가치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학교에 있다는 사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미국에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법률가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변호 기술과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가치 및 행동 규범을 배우지 못한 채 졸업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법조인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a lawyer)만 강조하고, “법조인처럼 행동하기”(doing like a lawyer)가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³⁾ 법학교육개혁 방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례 연구나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사용하는 이론 수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합하여 강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⁴⁾

미국의 법학교육방법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보고서가 몇 개 있다.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유명한 보고서가 1992년 MacCrate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법학교육의 중심을 “법조인처럼 생각하기”에서 “법조인처럼 행동하기”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로스쿨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지 검토하고, 학교와 실무의 간격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스크 포스

3) Rebecca Sandefur & Jeffrey Selbin, *The Clinic Effect*, 16 *Clinical L. Rev.* 57 (2009).

4) Roy Stuckey, et al., *BEST PRACTICES FOR LEGAL EDUCATION* (2007).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를 구성하였다. 당시 위원장은 1987년부터 1988년까지 ABA 회장을 지낸 Robert MacCrate 였다. 1992년 발표된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법학교육과 법조발전』(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 Educational Continuum)이다. 이것이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 MacCrate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다.

MacCrate 보고서는 로스쿨 교육의 중심이 변호 기술(lawyering skills)과 직업 가치(professional values)의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였다.⁵⁾ 보고서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10개로 제시하였다. 즉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법적 분석 및 추론(legal analysis & reasoning),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 사실조사(factual investig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자문(consulting), 협상(negotiation), 소송 및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litigation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법률사무의 조직 및 관리(organization & management of legal work), 윤리적 문제의 인식 및 해결(recognition & resolving ethical dilemmas) 등이다.⁶⁾ MacCrate 보고서는 그 후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여러 나라의 법학교육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⁷⁾⁸⁾ MacCrate 보고서가 강조한 법 기술과 직업 가치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 것이다.

미국 리걸클리닉협회(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CLEA)는 2007년 MacCrate 보고서를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Best Practices for Legal Education: A Vision and A Road Map』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하듯이, 로스쿨이 교육해야 할 최상의 실무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리걸클리닉협회는 최상의 실무가

5) David F. Chavkin, *CLINICAL LEGAL EDUCATION* 3 (2002).

6)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 EDUCATIONAL CONTINUUM* (1992).

7) 일본변호사연합회 법과대학원 평가기준(해설) 별지 2 참조. 여기서 제시된 법조인에게 필요한 7가지 기술은 문제해결능력, 법적 지식, 사실조사·사실인정 능력, 법적 분석·추론 능력, 창조적·비판적 검토 능력, 법적 논의·표현·설득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으로 MacCrate 보고서와 대동소이하다.

8) 인도의 경우 변호사로서 필요한 기술과 가치에 관해서 전적으로 MacCrate보고서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N.R. Madhava Menon, *CLINICAL LEGAL EDUCATION* (Reprinted 2008) 참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로스쿨에서는 이런 내용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리걸클리닉협회는 변호사 자격증이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전력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한다.⁹⁾ 로스쿨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 임무는 다양할 수 있다. 그 중 로스쿨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새내기 변호사가 실무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미국 로스쿨은 이런 기본 교육에 충실하지 않고, 이론 교육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 리걸클리닉협회는 로스쿨 교육의 부실이 부실한 법조인의 배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뢰인, 즉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의 우려는 사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법조인에게 필요한 변호 기술(lawyering skills)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미국에서 논의된 변호 기술 교육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조인은 (1)복잡다기한 사회 현상 속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2)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관련되는 자료를 연구·조사하고, (3)사실과 법에 바탕을 두고 당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4)구두 또는 문서로 자기의 해결 방안을 관련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5)협상, 소송, 중재 등 적절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¹⁰⁾¹¹⁾

9) Id. at 11.

10) 문제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과과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2005.4.21.)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집」, 18면.

11) 변호사의 능력과 관련된 요소는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다. 2000년 미국 로스쿨입학협의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 이하 LSAC)는 변호사의 능력을 26개 요소로 정리하고, 이 요소를 로스쿨 지망학생의 잠재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자 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Problem solving; 2. Practical Judgement; 3. Passion and engagement; 4. Analysis and reasoning; 5. Creativity/innovation; 6. Integrity/honesty; 7. Writing; 8. Community involvement and service; 9. Building client relationships and providing advice and counsel; 10. Organizing and managing (own) work; 11. Fact finding; 12. Self-development; 13. Researching the law; 14. Speaking; 15. Ability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others; 16. Strategic planning; 17.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과정으로 실습과정을 법제화하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보다 조금 빠른 2004년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리걸클리닉 교과목의 개설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적인 법학 교육방법의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다. 리걸클리닉은 실습과정의 일종이다. 리걸클리닉은 앞서 살펴 본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변호 기술 능력의 제고에 효율적인 교과과정으로 알려졌다. 미국 MacCrate 보고서와 Best Practices가 모두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학교육방법에 있어서 변호 기술 능력의 제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리걸클리닉은 실무교육과 가치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리걸클리닉은 학생이 직접 실무를 하면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변호 기술과 직업 가치(professional values)를 함께 습득하도록 하는 의도된 교육이다.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할 때 변호 기술과 직업 가치를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듯이, 로스쿨 교육에서도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교육시킬 수는 없다.

II. 리걸클리닉의 개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리걸클리닉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리걸클리닉이라는 말이 새로운 법조실무교육을 일컫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리걸클리닉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Networking and business development; 18. Stress management; 19. Listening; 20. Influencing and advocating; 21. Questioning/interviewing; 22. Negotiation Skills; 23. Diligence; 24. Organizing and managing others (staffs/colleagues); 25. Evaluation, development, and mentoring; 26. Developing relationships.

1.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리걸클리닉과 임상법학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로스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실습과정을 들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습과정’은 미국 로스쿨에서 말하는 리걸클리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의 하나라는 뜻에서 클리니컬 리걸 에듀케이션(clinical leg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리걸클리닉을 임상법학(臨床法學)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한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학생에게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임상의학(臨床醫學)이라고 하듯이, 실무담당 법학교수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생에게 법학교육을 시키는 것을 임상법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리걸클리닉 또는 임상법학은 주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후자를 현장학습과정이라고 부른다. 현장학습과정 역시 인턴쉽(internship) 또는 엑스턴쉽(externship)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리걸클리닉은 협의로 보면 순수한 의미의 리걸클리닉을 의미하지만, 광의로 보면 협의의 리걸클리닉에 현장학습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엑스턴쉽과 인턴쉽

실습과정 중 하나인 엑스턴쉽(externship)은 현장학습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엑스턴쉽은 학생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받는다라는 점에서 리걸클리닉과

동일하지만, 그 장소가 교내가 아니 교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교육자가 학교 소속 교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엑스턴쉽은 인턴쉽(internship)과 흔히 혼동되어 사용된다. 엑스턴쉽과 인턴쉽은 현장학습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턴쉽에서도 엑스턴쉽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학교를 떠나 전문기관에서 그 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일하면서 업무를 배운다. 외형상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엑스턴쉽은 인턴쉽과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엑스턴쉽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교육과정인데 반해, 인턴쉽은 다른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두 과정은 차이가 크다. 엑스턴쉽은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낸다. 인턴쉽은 외부 전문기관이 직원채용 및 수습과정의 일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에게 급여를 주기도 한다.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 법원, 검찰, 로펌, 정부기관 등에서 받은 교육은 엑스턴쉽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로이어링 또는 시뮬레이션

실무 법교육과 관련된 용어는 리걸클리닉 외에도 로이어링(lawyerling) 또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있다. 로이어링과 시뮬레이션은 같은 개념으로 보편되고, 시뮬레이션은 모의과정(模擬課程)이라고도 한다.

리걸클리닉과 로이어링은 개념상 구별된다. 로이어링 역시 리걸클리닉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복잡한 업무를 협력을 통하여 배우는 성찰적 학습(reflective learning) 방법이다. 흔히 로이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경험을 통한 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협력적 비판(collaborative critique)이다.¹²⁾ 리걸클리닉 역시 실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팀을 이뤄 실제 사건을 처리한 후 팀원 상호간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는 교육을 중시하므로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 모두 교육의 핵심 요소를 공유한다. 두 교육방법 모두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

12)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ING BY THE BOOK* 3 (2005).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이라는 점도 공통이다.

하지만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로이어링의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리걸클리닉에서는 학생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배운다. 두 교육방식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다. 로이어링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은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배우는 경험이 아니라, 잘 고안된 모의과정(simulation)을 통하여 체득하는 경험이다. 로이어링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제 업무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설정된 무대에서 모의로 역할을 수행한다. 로이어링을 개념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하면, 변호사로서 하여야 할 업무를 먼저 정의내리고(task definition), 실험적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experimental study), 그에 대한 비평(guided critique)을 하도록 고안된 특별한 교육 방식이라고 하겠다.¹³⁾

모의과정(simulation)은 처음 모델을 정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리걸클리닉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한 교과목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도 교수가 지도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모의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는 교육과정이므로 교수 한 사람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지 않다.

(4) 리걸클리닉 개념의 다양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협의의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순수한 의미의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다. 그러나 광의의 리걸클리닉은 협의의 리걸클리닉 외에 학생들이 학교 밖의 기관에 파견되어 외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학습하는 현장

1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미국 로스쿨 실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 2005, 7.면.

학습과정인 엑스턴쉽(externship)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 많은 로스쿨들은 자기 학교의 리걸클리닉을 소개하면서 모의과정(simulation)을 리걸클리닉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경우 리걸클리닉은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모든 교육과정이라는 최광의로 사용된 것이다. 리걸클리닉을 최광의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건이 아니지만 미리 잘 계획된 모델을 학습하면서 변호 기술을 배우는 모의과정까지 포함한다. 결국 실무 법교육 전반을 의미하게 된다.¹⁴⁾

미국 리걸클리닉협회가 발간한 『Best Practice』는 경험 학습과정(experiential course)으로 모의실습과정(simulated-based courses), 학내 클리닉, 엑스턴쉽 등 세 가지를 나열하고, 이 모두를 클리닉 과정(clinical courses)이라고 표현한다.¹⁵⁾ 미국 리걸클리닉협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한다. 세 과정 모두 로스쿨 학생들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변호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점, 실무 능력은 실무를 한다고 저절로 배양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성과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다른 사람의 피드백(feedback)이 동반될 때 향상이 크다는 점,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기평가를 하는 습관을 가질 때 학습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으로의 리걸클리닉의 개념은 동항 제4호에 ‘모의재판’을 ‘실습과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광의의 리걸클리닉 개념 중 모의재판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습과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i) 협의의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배우는 교육과정, ii) 광의의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학교 밖의 기관에 파견되어 외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학습하는 현장학습과정인 엑스턴쉽(externship)과 인턴쉽 등의 과정, iii) 최광의의 리걸클리닉 중 모의재판을 제외한 로이어링(lawyering) 또는 모의과정(simulation)을 포함

14) 롤 플레이의 사례에 대해서는, Philip G. Schrag & Michael Meltsner, *REFLECTIONS ON CLINICAL LEGAL EDUCATION* 58-65 (1998) 참고.

15) *BEST PRACTICE* 122.

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위 ii)의 광의의 클리닉은 엑스턴션쉽과 인턴쉽 등은 법원, 검찰, 로펌, 해당 기관 등에서 나름대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적다. 그러나 위 i)의 협의의 리걸클리닉인 학교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면이 있고, 위 iii)의 최광의의 리걸클리닉에 있어서 모의재판은 법원에서 판사들의 파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로이어링(lawyering) 또는 모의과정(simulation)은 아직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의 리걸클리닉의 의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의 개념 중 위 i)의 협의의 리걸클리닉(학교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위 iii)의 최광의의 리걸클리닉에 있어서 모의재판을 제외한 로이어링(lawyering) 또는 모의과정(simula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리걸클리닉의 이해

리걸클리닉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변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실무 교육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리걸클리닉을 실무 교육과 동일시하는 한, 리걸클리닉은 강의실에서 하는 이론 교육의 부수적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을 새로운 법학교육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리걸클리닉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방식이기 때문이다. 리걸클리닉에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변호사처럼 활동하면서 의뢰인이 갖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Donald Schön은 리걸클리닉을 반성적 실습(reflective practicum)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즉 학생이 교수의 도움으로 실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배우도록 고안된 교육무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서 실제 사건의 처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반성의 시간이다. 학생은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습하고, 반성적 실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지도교수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직접 행동하는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다루는 사건은 실제 사건이니만큼 학생은 변호사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 기술과 직업윤리를 의뢰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리걸클리닉에서 교수는 학생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변호 기술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돕고, 학생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함으로써 깨우치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리걸클리닉에서는 반성적 실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리걸클리닉은 효율성과 거리가 먼 교육방법이다. 리걸클리닉에서 효율성을 찾으려면, 학생이 아니라 교수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 리걸클리닉은 참여하는 학생이, 즉 아직 전문가가 아닌 학습자가 문제의 소재와 그 해결방안을 직접 찾도록 허용하는 데 큰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방법이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실제 사건은 학생에게 실습교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문제를 전문성이 결여된 학생들이 비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다. 리걸클리닉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Ⅲ. 리걸클리닉 교육의 역사 및 각 국에서의 운영현황

1. 미국 리걸클리닉 교육의 역사

미국 법학교육의 역사에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미국의 초기 법조인 양성방식은 변호사 밑에서 업무를 배우는 도제식이었다. 미국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법률수요가 크게 늘자 법조인을 교육으로 양성하는 로스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로스쿨은 1850년 15개교에 불과하였으나,¹⁶⁾ 1900년에는 102개로 늘어나면서 보편적인 법조양성기관이 되었다.¹⁷⁾ 미국의 대부분 로스쿨은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개설되었다. 로스쿨의 틀이 잡힌 것도 이 즈음이다. 1870년 하버드 대학은 로스쿨 학장으로 랑델(Christopher C. Langdell)을 임명한다. 랑델 학장은 당시 1년 과정이었던 로스쿨을 3년 과정으로 연장하고, 교과 과정을 대폭 개편하였다. 교수법도 판례집을 이용하고, 소크라테스식 질의응답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은 도제식 방식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던 강의식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랑델은 법학도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법학도 다른 과학처럼 책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랑델식 논리에 의하면 법학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수의 요건에 실무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후 랑델식 교육은 미국 로스쿨의 보편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고, 법학교육에 대한 통제는 실무계의 손을 떠나 법학계로 넘어갔다.

랑델의 교육방식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법현실주의자(legal realists)에 의하여 비판받게 된다.¹⁸⁾ 이들은 법을 통한 사회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책에 있는 법(law

16) 미국 최초의 로스쿨은 아니지만, 초기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존속한 로스쿨은 1817년 설립된 Harvard Law School이라고 하겠다. Harvard Law School에서 클리닉 교육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Jeanne Charn, *Service and Learning: Reflections on Three Decades of the Lawyering Process at Harvard Law School*, 10 Clinical L. Rev. 75 (2003).

17)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463, 464 (2001).

18) 이미 1917년 William Rowe는 클리닉 교육이 가장 좋은 법학교육방법이라고 역설하였다. William V. Rowe, *Legal Clinics and Better Trained Lawyers-A Necessity*, 11 Ill. L. Rev. 591 (1917) 참조. 1921년 Carnegie Foundation은 법학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그 결

in books)과 현실로서의 법(law in action)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고 노력하였다.¹⁹⁾ 그러나 그 실현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Myres McDougal이나 Harold Lasswell 같은 법현실주의자들은 로스쿨에서 정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Jerome Frank와 같은 학자는 클리닉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Jerome Frank는 1933년 “클리닉 로스쿨은 왜 안 되는가?” 라는 논문 등을 통하여 랑델식 법학교육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하였다.²¹⁾ 그의 논문은 리걸클리닉 교육의 청사진이었다.²²⁾ Jerome Frank는 이 논문에서 클리닉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가 실현되는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하였다. 즉 배심원이 사건을 결정하는 과정, 사건의 사실관계(facts)의 불명확성, 잘못된 기억·편견·위증이 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 판사의 피로·주의·정치적 영향력·뇌물수수·게으름·양심·인내·성급함·편향성·개방성 등이 미치는 영향, 계약 및 타결에 이르는 협상의 방법, 초안작성자 의식의 성격 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Jerome Frank 교수의 주장은 생전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²³⁾ 가장 큰 장애물은 재정 문제였다. 경제공황 직후인 1930년대와 1940년대, 미국의 어느 대학도 Frank의 생각을 추진할 수 없었다. 1951년 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미국 로스쿨에서 운영되고 있던 클리닉 교과목은 28개에 불과하였다.²⁴⁾ 1960년대 클리닉

과 보고서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Reed Report라고 불린다.

19) Laura G. Holland, *Invading the Ivory Tower: The History of Clinical Education at Yale Law School*, 49-4 J. Legal Educ 507 (December 1999).

20) Id.

21) Jerome Frank, *Why Not a Clinical Lawyer-School?*, 81 U. Pa. L. Rev. 907 (1933).

22) Frank 교수에 앞서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도 있다. 1911년 Harlan Fiske Stone은 어떤 분야에서는 법률사무소와 법정이 법학교육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하였으며, 1917년 William V. Rowe는 법학이 의학 등보다 뒤쳐졌다고 지적하고, 클리닉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John Saeger Bradway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와 Duke에 클리닉을 개설하였다. Rebecca Sandefur & Jeffrey Selbin, *The Clinic Effect*, 16 Clinical L. Rev. 57 (2009).

23) Yale Law School의 클리닉 센터는 그의 이름을 따서 Jerome N. Frank Legal Service Organization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15개 이상의 clinic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24) Quintin Johnstone, *Law School Clinics*, 3 J. Legal Educ. 535 (1951). 당시 28개 교과목 중 10개

교육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1960년대 미국은 사회 및 정치개혁의 시대였다.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법률지원사업을 통한 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클리닉 교수들은 학생들과 함께 법을 매개로 하여 사회정의 및 사회변화를 꾀하려고 하였다. 학생들은 로스쿨의 진부한 커리큘럼에 불만을 갖고 학교 당국에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⁵⁾ 그 당시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은 주요 대학에서 클리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천만 달러 이상 자금을 후원하여 클리닉 교육이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²⁶⁾ 포드재단이 처음 클리닉 교육을 후원한 것은 1959년이었고, 1965년 클리닉 지원을 조직화하여 본격적·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조직이 The Council on Legal Education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LEPR)이다. CLEPR은 1978년까지 활동하였다. 존속하는 기간 동안 CLEPR은 미국의 거의 모든 로스쿨에 최소 하나의 리걸클리닉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였다.²⁷⁾ CLEPR이 클리닉 프로그램을 자금지원한 학교는 107개에 달했다.²⁸⁾ 그 밖에도 CLEPR은 뉴스 레터를 발간해서 자금 지원에 관한 공고 뿐만 아니라 리걸클리닉과 관련된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뉴스, 리걸클리닉 관련 소식 등을 전달함으로써 리걸클리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클리닉 교수의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78년 이후 1997년까지 클리닉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미국 교육부에서 담당하였다.

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25) 대표적인 로스쿨이 Yale이다. 그 당시 Yale은 기업 변호사가 되는데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공익활동에 필요한 교과목을 요구하는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은 공익법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로스쿨이 되었다.

26) Margaret Martin Barry, Jon C. Dubin & Peter A. Joy,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 L. Rev. 1 (2000).

27) J.P. “Sandy” Ogilvy, *Celebrating CLEPR’s 40th Anniversary: The Early Development of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Legal Ethics Instruction in U.S. Law Schools*, 16 Clinical L. Rev. 1 (2009).

28) Peter A. Joy & R. Kuehn, *The Evolution of ABA Standards for Clinical Faculty*, 75 Tenn. L. Rev. 183 (2008).

1970년대와 1980년대 클리닉 교수들은 클리닉 교수기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기법 및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클리닉 교육이 교육방법의 하나로 정착하게 된다.²⁹⁾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1992년 클리닉 보고서(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the In-House Clinic)다. 여기에서 클리닉 교수들은 클리닉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선언한다.³⁰⁾ 1994년에는 학술지 Clinical Law Review가 창간되었다. 역사적으로 클리닉 교육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미국의 클리닉 교육은 자발적이고, 학생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³¹⁾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 3학년 학생 중 64%가 재학 중 클리닉이나 엑스텐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2007년 조사에서는 로스쿨 학생 32%가 실제 사건을 다루는 클리닉에, 33%가 현장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³³⁾

일반적으로 리걸클리닉을 교육하는 것은 일반 법학교육보다 또 직접 실무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리걸클리닉 담당교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교육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⁴⁾ 현재 미국에 클리닉 담당자들의 모임으로는, AALS의 클리닉 분과(clinical section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CLEA(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³⁵⁾, SALT(Society of American Law

29) New York State Judicial Institute, *PARTNERS IN JUSTICE: A COLLOQUIUM ON DEVELOPING ON COLLABORATIONS AMONG COURTS, LAW SCHOOL CLINICAL PROGRAMS AND THE PRACTICING BAR*, Introduction to Clinical Legal Education 13 (2005).

30) Robert Dinerstein, et 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the In-House Clinic*, 42 J. Legal Educ. 508, 511 (1992).

31) THE LEGAL CLINIC FOUNDATION, *THE LEGAL CLINIC: THE IDEA, ORGANIZATION, METHODOLOGY* 47 (2005).

32) Law Schoo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2006 Survey Results* (2006).

33) Rebecca Sandefur & Jeffrey Selbin, *The Clinic Effect*, 16 Clinical L. Rev. 78 (2009).

34)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리걸클리닉은 실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학생에게 단순히 변호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Justine A. Dunlap & Peter A. Joy, *Reflection-in-action: Designing New Clinical Teacher Training by Using Lessons Learned From New Clinicians*, 11 Clinical L. Rev. 49 (2004).

35) CLEA는 처음 클리닉 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HANDBOOK FOR NEW CLINICAL TEACHERS』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자료는 CLEA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Home page, 23 Dec. 2012

Teachers) 등이 있다.

2. 다른 나라에서 리걸클리닉의 발전

(1) 일반론

클리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주장은 100여 년 전에도 있었다. 러시아 학자 Alexander I. Lyublinsky는 일찍이 1901년 리걸클리닉 교육에 관한 논문을 썼다.³⁶⁾ 그러나 실제로 클리닉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다. 세계의 리걸클리닉 교육의 발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전한 리걸클리닉 교육이 세계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리걸클리닉 교육은 새로운 법학 교육방법이자,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미국 포드 재단과 록펠러 형제 재단(Rockefeller Brothers Fund)의 재정 지원으로 1973년 클리닉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978년에 가셔야 대학이 공식 인정하였다. 현재 클리닉 단체로 AULAI(Association of University Legal Aid Institution)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클리닉은 교수나 실무가에 의한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수십년 동안 운영되어왔다. 최근 포드 재단이 재정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리걸클리닉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최근 특징이다.

(2) 중국

중국 역시 2000년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클리닉 교육이 시작되어 현재 무척

〈http://www.cleaweb.org/new_clinicians_handbook_2009.pdf〉 참조.

36) Lyublinsky, A., "About Legal Clinics," *Journal of Ministry of Justice(Russia)*, 175-181 (Jan. 1901). (THE LEGAL CLINIC FOUNDATION, *THE LEGAL CLINIC: THE IDEA, ORGANIZATION, METHODOLOGY* 45 (2005)에서 재인용).

활기를 띄고 있다. 당시 포드 재단이 재정 지원을 한 대학은 7개 대학 법과대학이었다. 2002년 7월 28일 중국임상법학자협회(Chinese Clinical Legal Educators Committee, 이하 CCLEC)가 설립되었다. 당시 참여한 대학은 11개였다. 2011년 현재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은 145개로 늘어났다. CCCLE는 2012년 11월 24~25일 북경 인민대학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리걸클리닉 교수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Agenda for 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CLE)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UNDP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였다.

중국에서 리걸클리닉이 성공하게 된 것은, 리걸클리닉이 중국의 법학교육을 선진화하는 개혁적 수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³⁷⁾ 중국 리걸클리닉 교육의 성과를 보면, 특성화된 리걸클리닉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 교수와 외국 교수 간 클리닉 교육경험을 공유하는 교류가 늘어났으며, 교육방법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리걸클리닉 관련 책의 출판이 늘었으며,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하는 리걸클리닉 관련 컨퍼런스가 자주 개최되고 있으며,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이 늘어났으며, 리걸클리닉 참여 학생 수가 늘어났으며, 법학교육의 개혁 및 혁신을 증진시키며, 리걸클리닉 교육프로그램이 각 대학의 교육개혁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며, 리걸클리닉 교육이 법학교육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걸클리닉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 리걸클리닉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다. 일본은 2004년 4월 미국식 로스쿨인 3년제 법과대학원제를 시작하였다.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1세기 일본을 지탱하는 사법제도’라는 의견서를 내고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제도

37) Zhen Zhen, *Clinical Legal Education in China, Current Situation and Its Future of China's Clinic Legal Education*, Papers for Experiential Education Conference (2009).

개혁심의회는 사법시험이라는 점(point)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프로세스(process)로서의 법조양성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법과대학원 설치를 주장하였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법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실무교육의 도입을 아울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이를 ‘실무와의 가교(架橋)를 고려한 교육’이라고 표현하였다. 임상교육, 즉 리걸클리닉은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과목이다.

일본의 경우 임상교육 과목의 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이 반드시 임상교육 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상교육 과목을 개설하는 법과대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로스쿨제를 시작하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개설된 68개 법과대학원 중 조사에 응답한 33개 법과대학원 중 임상교육 과목을 개설할 계획인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하였다.³⁸⁾ 하지만 2009년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로는, 74개 법과대학원 중에서 실제 의뢰인을 접하는 방식의 임상교육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39개교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³⁹⁾ 또 2011년 조사에서 엑스텐션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38개교로 나타났다.⁴⁰⁾ 시뮬레이션 방식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재판이나 모의법정실무를 개설하는 학교는 임상법학이나 엑스텐션보다 더 많았다. 민사법정실무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74개교 중 60개교로 81.0%에 달했으며, 형사모의재판은 74개교 중 66개교가 개설해서 89.1%가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의 법과대학원들은 임상교육을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종래 법학부 교육에서 볼 수 없던 법과대학원 교육의 특색이라고

38) Peter A. Joy, et. al., *Building Clinical Legal Education Programs in a Country Without a Tradition of Graduat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Japan Educational Reform as a Case Study*, 13 *Clinical L. Rev.* 417 (2006).

39) Shigeo Miyagawa,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Jap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2012. 3., 29면.

40) 상계논문, 30면.

할 수 있다.⁴¹⁾ 임상법학을 통하여 학생들은 변호사 교원의 책임과 지도 아래 법령·판례 조사, 제반사실 조사, 내용증명 등 문서 작성,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 작성, 현장 조사, 각종 보고서 등 문서 작성을 실제로 해보면서 변호사 업무를 학습하게 된다. 임상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며, 학생들이 법조윤리에 대한 관심, 법조직에 대한 동기부여가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⁴²⁾ 학교 로펌의 설립도 새로운 현상이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학교 관련 로펌은 15개 개설되었다고 한다.⁴³⁾ 대표적인 학교로 와세다 로스쿨, 호세인 로스쿨, 쓰꾸바 로스쿨 등이 있다.

그러나 법과대학원이 임상교육 과목을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과대학원은 법조인양성체계에 있어서 미국 로스쿨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처럼 임상교육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다시 교육하는 기관이 없는 반면 일본은 법과대학원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연수원 교육을 1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사법연수원 교육은 법과대학원보다 더 실무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에서 반드시 임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일류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까 두려워 변호사 시험과목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⁴⁴⁾ 따라서 임상교육이 법학교육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그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에 개설되거나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목은 사법시험과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41) 浦川 道太郎,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の現状”, 『日韓兩國におけるロース쿨の理念と課題』日韓法学会 第5回 共同シンポジウム 주제발표문 (2006. 8. 26) 61면.

42) 상계발표문.

43) Shigeo Miyagawa, 31면.

44) 미국의 경우 첫번째 응시자의 평균 합격률은 75%, 응시자의 평균 합격률은 64%(재시자의 합격률이 초시자보다 낮기 때문임), 궁극적인 합격률은 94.8%에 이른다. Linda F. Wightman, *LSAC National Longitudinal Bar Passage Study* viii, 2 (1998).

일본은 당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높게 설정했지만, 이런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0년까지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늘리고 합격률을 70~80%로 유지하는 계획이 발표됐었다. 하지만 법과대학원 출신자가 처음 신사법시험을 보던 해인 2006년 합격자 수는 1,009명에 불과하였고, 합격률도 48.35%로 50%를 넘지 못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보면, 2007년 1,851명(35.06%), 2008년 2,065명(32.98%), 2009년 2,043명(27.67%), 2009년 2,074명(25.40%), 2011년 2,063명(23.54%), 2012년 2,102명(25.1%)로 나타났다. 합격자 수가 2,000명 수준으로 고정되면서 합격률은 계속 떨어지다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과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번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탈락자 수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실무교육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학교 교육과 법조실무 교육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데 있다.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에는 법과대학원 교육을 ‘실무와의 가교(架橋)를 고려한 교육’ 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막상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실무와의 가교를 고려한 교육’ 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수준에 대해서 교수들 간에 공감대가 없다고 한다. 이 밖에 임상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부족은 일본 임상교육이 활성화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리걸클리닉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법학교육 개혁의 선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학술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다른 실무교수들과 공유하고 있다.⁴⁵⁾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2008년 임상법학교육학회를 설립하였으며, 매년 학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法曹養成と臨床教育』를 발간하고 있다. 2010년 4월 임상법학교육학회 제3회 연차대회에서는 ‘동아시아에 있어 법조양성과 임상법학교육 - 日中韓의 현상과 협력’ 이라는 주제로 워크숍(workshop)이 열렸다. 이 행사는 2012년 11월 중국 CCCLE이 개최한 컨퍼런스(Agenda for 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CLE)의 모태가 되었다.

45) 일본에서 전개된 학술 논의의 일부는 부록에 게재되었다.

(4) 독일

독일에 있어서 법학교육은 지방분권적인 법학교육과 국가고시가 일체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각 주의 경우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주법에 따라 이러한 국가고시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 통상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과정에서 1차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이든지, 그 후 3개월간의 실습기간을 통한 실무실습,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1차 국가고시 합격 후의 24개월간의 실무수습 등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걸클리닉과 유사한 교육이 독일의 법과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리걸클리닉 교육은 2010년경 하노버 대학과 뒤셀도르프 대학, 훔볼트 대학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하노버 클리닉은 미국의 리걸클리닉을 그 모델로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리걸클리닉의 대상이나 접수하는 사건의 영역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각 국에서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

(1) 미국

1)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⁴⁶⁾

① 개요 및 특징

컬럼비아 로스쿨은 미국 뉴욕시에 소재한 로스쿨로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2012년 베스트 로스쿨 4위에 랭크되었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법연구소(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컬럼비아 로스쿨 학생들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좋은 로펌에 취직이 되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리걸클리닉 참여보다는 인턴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46) *Columbia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columbia.edu/focusareas/clinics>〉 .

강하기 때문이다.⁴⁷⁾

이런 이유로 컬럼비아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에 있어 공익법(public interest law) 연구에 주력하면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pro bono)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②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주요 클리닉으로는 2012년 현재 어린이 보호 클리닉(Child Advocacy Clinic), 환경법 클리닉(Environment Law Clinic), 인권 클리닉(Human Rights Clinic), 수감자의 권리와 환경에 관한 클리닉(Challenging the Consequences of Mass Incarceration Clinic), 수용자와 가족 클리닉(Prisoners and Families Clinic), 디지털 시대의 로이어링 클리닉(Lawyering in the Digital Age Clinic), 조정 클리닉(Mediation Clinic), 비영리 조직/소기업 클리닉(Nonprofit Organization/Small Business Clinic), 지역사회 및 기업 클리닉(Community Enterprise Clinic), 성과 성 정체성 클리닉(Sexuality And Gender Law Clinic)으로 10개의 클리닉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2) 예일 로스쿨(Yale Law school)⁴⁸⁾

① 개요 및 특징

예일 로스쿨은 미국 뉴헤이븐에 소재한 탑랭크의 로스쿨로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베스트 로스쿨부분에 있어 2012년에도 1위로 선정되었다. 예일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은 철저하게 학생들이 실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쪽에 치중하고 있어 실무교육에 있어서 클리닉 교육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 예일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수업은 1학년 2학기

4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 추진단, “미국 로스쿨 실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 2005. 11. 4면.

48) Yale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yale.edu/academics/clinicalopportunities.htm>〉.

부터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 전까지 전체학생의 2/3 정도가 클리닉 수업을 듣는다.

② 리걸클리닉센터(Jerome N. Frank Legal Services Organization)

예일 로스쿨은 로스쿨도 처음 시작되었으며, 리걸클리닉의 도입에 있어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학생들이 뉴헤이븐 지역에 법률지원을 나가면서 예일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제롬 프랭크(Jerome Frank) 교수가 클리닉 교육을 주장하면서 리걸클리닉이 예일 로스쿨에 도입되었고, 클리닉 센터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라 Jerome N. Frank Legal Services Organization으로 불린다.

위 클리닉 센터에 개설된 분과로는 1) 어린이 및 청소년 변호 클리닉, 2) 루드비히 CED 클리닉, 3) 시민의 자유와 국가 보안 클리닉, 4) 형사 변호 클리닉, 5) 이민 법률서비스, 6) 치안 클리닉에서의 혁신, 7) 임대차 관련 법률서비스, 8) 로이어링 윤리 클리닉, 9) 뉴 헤이븐 법률지원 클리닉, 10)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법률서비스, 11) 입법활동 클리닉, 12) 저당 채권 소송 클리닉, 13) 초국가적 개발 클리닉, 14) 재향 군인의 법률서비스 클리닉, 15) 노동자와 이민자 권리 옹호 클리닉이 존재한다. 예일 로스쿨은 단순히 소송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제언 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공익성이 타 로스쿨에 비하여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③ 그 외의 클리닉 프로그램

예일 로스쿨의 그 외 리걸클리닉으로는 1) 국제 인권 클리닉(Allard K. Lowenste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2) 사형제 클리닉(Capital Punishment Clinic), 3) 교육 타당성 프로젝트 클리닉(Education Adequacy Project Clinic), 4) 환경 보호 클리닉(Environmental Protection Clinic), 5) 윤리 클리닉(Ethics Bureau), 6) 이라크 난민 지원 프로젝트(Iraqi Refugee Assistance Project), 7) 지역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루드비히 센터(Ludwig Center for Community & Economic Development), 8) 미디어 자유 및 정보 액세스 클리닉(Media Freedom and Information Access

Clinic), 9) 비영리 단체 클리닉(Nonprofit Organizations Clinic), 10) 대법원 클리닉(Supreme Court Clinic)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추가로 San Francisco Affirmative Litigation Project (SFALP)는 혁신적인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사무소와 예일 로스쿨 학생들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용불량자, 건강과 유아 비만, 이민자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 및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 SFALP 프로그램은 동 분야에 있어서 최초의 프로젝트이며 국가적 모델이 되고 있다.

④ 재정적 지원

리걸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예일 로스쿨은 초기인 1967년에 외부 자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교수가 감독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포드재단이 클리닉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만든 CLEPR에 1969년 보조금을 신청하여 여러 클리닉 프로그램을 만드는 재정을 지원받았다. 1978년 이후 1997년까지의 클리닉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미국 교육부의 담당으로 미국정부가 부담하였다.

3) 뉴욕 로스쿨(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⁴⁹⁾

① 개요 및 특징

뉴욕 로스쿨은 탑 로스쿨 중에서도 임상교육 과정을 중시하여, 학년마다 구조화하여 학생을 1년차부터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⁵⁰⁾ 1학년의 필수과정은 로이어링 프로그램인데, 1학기에는 법률정보 조사와 법문서 작성을 배우고, 2학기에는 의뢰인과 증인과의 면접, 교섭의 기법을 배운다. 2학년 과정은 소송 기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선택과정으로 배울 수 있다. 3학년 과정은 클리닉 프로그램인데, 뉴욕주의

49)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nyu.edu/academics/areasoffocus/clinics/index.htm>〉.

50)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에서 배우는 임상법학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78면.

법에 따라 담당 교수와 함께 직접 법정에 출정하여 실제 의뢰인을 대리하고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② 로이어링 프로그램(Lawyer Program)

뉴욕 로스쿨은 로이어링 프로그램(Lawyer Program)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방식으로, 변호사 업무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에 대한 비평을 하도록 고안된 교육방식이다.⁵¹⁾ 직접 변호사처럼 역할을 하게 되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경험을 하고, 나아가 실정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⁵²⁾ 클리닉 프로그램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반면 로이어링 프로그램은 필수이수과목으로 운영된다. 1학년에 5학점 과목으로 pass or fail으로 평가되며, 한 반에 28명이 수업을 받는다.

③ 클리닉 프로그램(Law Clinic)

한편 뉴욕 로스쿨에서는 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바, 변호사로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⁵³⁾ 1년 단위 클리닉에는 Brennan Center 공공정책 변론(Public Policy Advocacy) 클리닉, 사형변호 클리닉(Capital Defender), 민사 법률서비스 클리닉, 인권법 클리닉, 지역사회 변호 및 사회복지 클리닉, 가정문제 클리닉, 연방변호 클리닉 등이 있다. 한 학기 단위 클리닉에는 지역사회 경제발전 클리닉, 지역사회 원조, 교육, 조직화 클리닉, 비교 형사사법 클리닉, 형사항소 변호 클리닉, 환경법 클리닉, 정부 민사소송 클리닉, 조정 클리닉, 검찰 클리닉 등이 있다. 1년 단위 클리닉은 각 14학점이 부여되고(연방변호 클리닉은 10학점), 한 반에 6~10명이 수업을 받는다.

51)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44면.

5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전개보고서, 2005. 11., 7면.

53) 김인회, 전개논문, 44면.

4) 하버드 로스쿨(Havard Law School)⁵⁴⁾

① 개요 및 특징

하버드 로스쿨은 미국 전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실무과목, 임상법학으로 개설된 과목이 40여개에 이른다. 2학년 및 3학년이 주된 대상이며, 당해 학년의 약 40%에 해당하는 400명 정도가 참가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교육의 중점은 첫째,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능과 가치관, 윤리관을 확실히 몸에 익히고, 둘째, 법의 이론 및 원칙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도 습득하고, 셋째,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 직접 해당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⁵⁵⁾

②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Hale & Dorr Legal Service Center)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는 하버드 로스쿨 직영의 민사 클리닉이다. 이 센터는 현재 사회보장, 주거문제, 가족 문제 등 분야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각각 담당 변호사와 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합동으로 일을 한다.⁵⁶⁾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다를 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센터에서는 1학기에 약 10여건의 사건을 담당변호사와 학생들이 처리한다.

③ 형사사법연구소(Criminal Justice Insititute)

형사사법연구소는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처럼 하버드의 의뢰인 서비스형 리걸클리닉으로,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형사사건의 변호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클리닉에 참가하여 일을 하기 전에 5-6시간 정도 집중적인 준비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공판변론수업, 배심심리 및 인터뷰, 보석 시뮬레이션 등이 이에 포함된다.⁵⁷⁾ 평균적으로 한 학생은 연간 6-8건을 담당하며, 클리닉에는 4인의 전임교수가 있는데,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작성한 문서를 살피고 조언한다.

54) *Harvard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 .

55) 김인희, 전계논문, 49면.

56) 박찬운, 전계논문, 76면.

57) 상계논문, 77면.

학생은 주 20시간을 클리닉을 위하여 일하고 8학점을 취득한다.

5) 버클리 로스쿨(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⁵⁸⁾

① 개요 및 특징

버클리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은 1988년 학생들이 지역법률센터(communitary law office)를 설립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센터는 지금 이스트 베이 지역법률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로 남아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세미나와 엑스텐션이 포함된 임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92년에는 Herma Hill Kay가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임교원에 의한 클리닉 교육을 주장하였고, 1996년 교수회가 클리닉교육센터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② 클리닉 교육센터⁵⁹⁾

현재 교육센터는 1) 국제인권법 클리닉(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linic), 2) 기술과 공공정책 클리닉(Samuels Law, Technology & Public Policy Clinic), 3) 사형제 클리닉(Death Penalty Clinic)의 세 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클리닉은 1998년에 개설하여 학생들이 보스니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과 공공정책 클리닉은 의회의 법률제정, 정부의 행정입법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s)를 제출하기도 한다. 사형제 클리닉은 사형수를 대리하여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클리닉으로 교육센터 소장인 Weisselberg 교수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③ 그 밖의 클리닉 프로그램

또한 별도의 클리닉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이스트 베이 지역법률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지역 사회에 있어서 빈곤

58) *Berkeley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berkeley.edu/clinics.htm>> .

5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전계보고서, 30면.

층의 주택, 의료, 사회보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이 외부의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실무를 배우는 익스텐션도 운영하고 있다.

④ 클리닉의 운영

모든 클리닉은 실제 클리닉과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세미나를 통하여 교수는 클리닉과 관련된 법을 강의하고, 학생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클리닉과 세미나에 대해서 모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보통 세미나에 2학점, 클리닉에 4학점을 취득하고 있다.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 클리닉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수강신청에 있어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⑤ 재정적 지원⁶⁰⁾

클리닉 교육은 교수대 학생비율이 일반 법학강좌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클리닉 교육의 성공에 있어서 재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역의 변호사 단체와 최소한으로는 갈등이 없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지역의 변호사 단체에서 지역 클리닉(community clinic)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등 협조적인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스탠포드 로스쿨(Stanford Law School)⁶¹⁾

① 개요 및 특징

스탠포드 로스쿨은 다른 로스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로펌 수준의 고급시설을 갖춘 리걸클리닉센터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은 클리닉 교육이 변호사로서 필요한

60) 상계보고서, 31면.

61) *Stanford Law School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stanford.edu/clinics>〉 .

스킬을 학습하게 하는 효과보다 법률가로서 마인드를 지니는 습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반성적 고찰을 하는 변호사(reflective lawyer)는 법학을 배우는 초기부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일 로스쿨과는 달리 1학년을 마친 뒤에야 클리닉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클리닉의 운영은 클리닉 교수뿐 아니라 법학교수가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예컨대 환경법, 사이버법 등을 직접 강의하는 교수가 클리닉도 운영하는 형태이다. 클리닉은 도움을 받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 선임료 등 비용을 전혀 받지 않기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⁶²⁾

② 개설된 클리닉 프로그램

스탠포드 로스쿨은 1) East Palo Alto라는 낙후지역에 위치한 community law clinic, 2) 형사 변호에 관한 criminal defense clinic, 3) 형사소송 클리닉인 criminal prosecution clinic, 4) Juelsgaar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clinic, 5) 교육에 관한 Youth and education Law Project, 6) 환경법에 관한 environmental law clinic, 7) 이민자에 관한 immigrant's right clinic, 8) 국제인권 및 분쟁해결에 관한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Conflict Resolution Clinic, 9) 대법원 상고를 다루는 supreme court litigation clinic, 10) Organizations and Transactions Clinic, 11) 종교의 자유에 관한 Religious Liberty Clinic, 12) 사회보장과 장애와 관련한 Social Security Disability Pro Bono Projec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클리닉 센터를 찾아오는 것은 교육에 관한 클리닉과 이민자 권리에 관한 클리닉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community law clinic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탠포드 로스쿨 내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62) 김인희, 전제논문, 48면.

7) 워싱턴 로스쿨(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⁶³⁾

① 개요 및 특징

워싱턴 로스쿨은 임상법률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고객을 대리하고, 실제 사건을 중재하거나 현실의 프로젝트의 일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공공선(Global Common Good)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워싱턴 로스쿨은 인하우스 클리닉이나 익스텐션을 참여하게 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로스쿨의 학생들의 70%정도는 졸업까지 적어도 하나의 클리닉에 참여한다고 한다.

② 임상 법률 프로그램(Clinical Law Program)

워싱턴 로스쿨의 클리닉 프로그램으로는 1)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클리닉(Children and Youth Advocacy), 2) 기업 법률 클리닉(Entrepreneurial Law), 3) 연방 세금 클리닉(Federal Tax) 4) 이민자에 관한 클리닉(Immigration Law), 5) 북서지역의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 Northwest), 6) 입법활동 클리닉(Legislative Advocacy), 7) 중재 클리닉(Mediation), 8) 기술 법률 및 공공정책에 관한 클리닉(Technology Law and Public Policy), 9) 스트리트 법률 클리닉(Street Law)⁶⁴⁾, 10) 원주민의 법원에서 공공 변호 클리닉(Tribal Court Public Defense), 11)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클리닉(Workers' Rights)이 있다.

63) *University of Washington of Law Home Page*, 07 Jan. 2013

〈<http://www.law.washington.edu/Clinics>〉 .

64) 스트리트 법률(Street Law)은 토론식 교육법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

실제의 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의미한다. 워싱턴 로스쿨에서는 한 학기동안 매주 2시간씩 시애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법적 책임과 권리에 관하여 토론식의 수업을 통해서 수행하며 스트리트 법률 클리닉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8) 노스이스턴 로스쿨 가정폭력 클리닉

① 개요 및 특징

노스이스턴 로스쿨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여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클리닉의 종류로는 1) 지역사회 클리닉, 2) 시민의 권리와 사법정의 클리닉, 3) 가정폭력 클리닉, 4) 빈민법 클리닉, 5) 수감자 권리 클리닉, 6) 공중 보건 클리닉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정폭력 클리닉이 보스턴 지역 법원 및 의료 센터와 협력을 하는 등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② 가정폭력 클리닉⁶⁵⁾

1990년 여름에 Clare Dalton 교수의 ‘가정폭력 세미나’를 시작으로 노스이스턴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로스쿨 교육 및 공공서비스 임무 속으로 통합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가정폭력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노스이스턴 로스쿨에서는 가정폭력 클리닉을 통해 매 맞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돕고 있다.

노스이스턴 로스쿨 가정폭력 클리닉의 목표는 1) 현재 및 장래에 매 맞는 여성들을 대리할 여성들과 남성들을 교육시키는 것, 2) 매 맞는 여성들에게 즉각적으로 가정폭력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3)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복잡한 과제의 이해, 그리고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것이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연례학술대회, 가정폭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보스턴 메디컬 센터 가정폭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스턴 메디컬 센터 가정폭력 프로젝트는 응급실에 오는 모든 여성들을 면담하기 위하여 1학년 학생들을 병원 응급실에 배치한다. 1차적으로 면담인

65) 전해정, “미국 임상법학 교육방법 이론과 실제 -가정폭력 클리닉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8, 178-228면.

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3학년 학생들은 가정 폭력 클리닉 참여에 있어서 실제 권익옹호와 법률지원 서비스에 참여케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법원에서 일주일에 12~16시간 동안 실습을 하고, 변호사나 변호사 보조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있다.

(2) 중국

1) 발전현황

2008년11월, 중국 전역에 설치된 법학원이 634개에 달하면서 30여년전 보다 105.67배 증가하였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 30만명을 넘었고 전문 대학교에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30여년보다 200배 증가한 22만명이 넘었으며,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6만명을 넘으면서 예전보다 260배 증가하게 되었다.⁶⁶⁾ 이런 배경 하에, 중국은 법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고 미국 Ford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00년 9월부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무한대학, 중남 재경정법대학, 화동정법대학 및 부단대학의 각 법학원은 CLE(Clinical Legal Education; 임상법률교육, 이하 CLE라 약칭함)과목을 설치하였다. 2002년에 이르러서는 중산대학, 서북정법대학, 사천대학 및 운남대학 법학원도 CLE과목을 설치하게 되었다. 2002년 7월 28일, 중국법학회의 승인을 받은 후, 위 11개 대학을 주축으로 하여 중국법학회 법학교육연구회 상담소법률교육전문위원회(中國法學會法學教育研究會診所法律教育專業委員會, CCCLE)가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 중국정법대학에서도 CLE과목을 개설하게 되면서 이후 10년 동안 법률상담교육은 중국 각 대학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다. 2012년 10월까지 CCCLE에 참가한 법학 대학 및 법학원은 149개에 달하게 되었고,⁶⁷⁾ CLE과목은 중국 각 법학교육기관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66) 中國社科院法學研究所. 中國法治發展報告No.7(2009)[M].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9,331頁.

67) 劉英, 大專院生診所法律教育的可行性探討,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CLE. 318頁.

2) 사건의 전문화

중국 각 대학의 법률상담소는 비교적 명확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성격의 사건을 다룬다. 예컨대 중국인민대학교에 법률상담소는 형사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무한대학 법률상담소는 행정소송 중 정부가 아닌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칭화대학 법률상담소는 소비자 분쟁의 조해와 같은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법학 교육 과목의 발전으로 각 학교는 과목의 특징에 따라 그 분야와 관련된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정법대학에 지적재산권법과목 하에 지적재산권 법률상담소가 있고, 환경법과목 하에 환경법률상담소가 있고, 노동법과목 하에 노동법률상담소가 있다. 전공 분야를 다루는 법률상담소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공과목 중심의 강의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전문적으로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

3) 인원 구성 및 학생의 선발

① 인원 구성

먼저 CLE과목 담당자와 법률상담소의 담당자는 동일하고 학교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리고 법률상담소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주로 법률상담소 내의 일반 업무를 협조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행정직원은 법학원의 교직원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된 전문직원일 수도 있으며, 조교학생일 수도 있다. 예컨대 중화여자학원의 법률상담소는 전문적인 행정직원이 배치된다. 칭화대학 법학원은 합조법률상담소 → 독립법률상담소 → 합조법률상담소로 발전하였는데, 독립법률상담소의 경우,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합조법률상담소의 경우는 대학원생들을 채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또한 학생조교 또는 각 과목대표⁶⁸⁾가 정해져 있다. 학생조교 또는 과목 대표는 학생들을 조로 나누어 편성하고 과목담당선생님과 상담소 학생들이 서로 연락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CLE과목에 참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담당선생님이

68) 칭화대학 법학원의 법률상담소의 조교는 적어도 1년 이상으로 채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하에 채용하지 않는다. (汪世榮 主編, 有效的法學實踐教育, 法律出版社 2012年 5月, 161頁.)

CLE과목의 이론 교육을 잘 준비하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소의 학생 즉 CLE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강의를 들을 뿐 아니라 상담소의 규칙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담소에서 당직을 하거나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태도와 당직 기록 등은 모두 CLE과목의 고찰사항에 해당된다.

② 학생의 선발

가. 선발 방식

학교마다 CLE과목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르고 학생들에 대한 선택방식도 다르다. 예컨대 종합 대학(베이징 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무한대학, 부단대학 등)은 법학과목을 공부하려는 학부생에 대한 입학 인원수를 제한하므로 기본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CLE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대학교(중국 정법대학, 서북정법대학, 화동정법대학 등)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CLE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가능한 학생선발방식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CLE과목을 신청할 학생들을 상대로 해당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만 CLE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먼저 CLE과목을 신청하도록 하고 만일 예정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면접하고 선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학기 말에 CLE과목의 수강신청을 공지하고, 새 학기 시작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때, 학생들의 태도와 적극성 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나. 선발의 대상

법률상담소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해당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구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LE과목은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CLE과목의 경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또한 담당선생님은 학생들이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하기 위해서 CLE과목당 학생수가 약20명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중국정법대학 환경법 CLE과목은 학생수를 24명으로 제한하고 지적재산권법 CLE과목은 학생수를 15명으로 제한한다.

4) 사건의 출처

적절하고 안정된 사건은 법률상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법률상담소의 운영 과정 중이나, 특히 설립 초기에 직면하는 문제도 적절하고 안정된 사건의 공급에 있다. 중국 광둥성에 설립된 법률상담소는 현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관련 사건을 공급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활동 중에 여러 사건들을 스스로 얻게 된다.

첫째로 그 법률상담소가 직접 사건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률상담소는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하는 곳과 전문적인 당직자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능력을 키운다.

둘째로 CLE과목 또는 법률상담소를 담당하는 선생님, 개인 또는 다른 관련인의 소개로 사건을 접수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LE과목의 담당 선생님은 일정 법률 경력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다양한 사건의 공급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간단한 몇 사건을 법률상담소의 학생들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공급 받는다. 예컨대 화남사범대학 법학원의 법률상담소는 법률지원 대상을 본교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하여 법률 상담소가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광둥상학원 법학원 법률상담소는 CLE과목 수강생 중 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립 총공회노동법률지원팀(總公會勞公法律支援隊)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법률홍보, 법률상담, 법률조사 등 법률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5) 과목의 내용

CLE과목의 내용은 일반 법과목의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 대부분 학교의 CLE과목은 주로 강의실 내의 교육과 강의실 외의 교육 둘로 나뉜다. 담당선생님의 강의를 완료된 후 학생들은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법률상담소에서 당사자를 만나는 것,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 등이 일반적인 활동이다.⁶⁹⁾ 예컨대 중국정법대학 환경법 CLE과목은 홀수 주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환경법 법률상담소와 협력하여 주 마다 학생들이 조별로 환경오염피해자보호센터에서 실제적인 사건을 접할 수 있다. 강의에서는 주로 담당 선생님이 실무와 관련된 이론 지식을 가르치고 사건 처리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알려준다. 필요하다면 법원 판사, 중재원 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 할 수 있다.

6) 운영방식

중국에서는 주로 합조의 방식으로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⁷⁰⁾ 일반적으로 합조 기관은 각 학교에 속하는 법률지원기관이고 해당 법률상담소가 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다. 예컨대, 무한대학의 법률상담소는 교내의 약자권익보호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중국정법대학의 환경법 법률상담소는 교내의 환경오염피해자보호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상담소 담당선생님은 CLE과목의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상담소에서 과목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상담소의 업무중 일부에만 참여할 뿐이다. 상담소는 학생의 참여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예컨대, 중국정법대학의 환경오염피해자보호센터는 독립적인 법률지원센터이고 그 센터를 CLE과정을 위한 기관으로

69) 汪世榮 主編, 上揭書, 124頁.

70) 韓桂君, 診所法律教育模式研究, 中南財經政法大學教育思想觀念大討論論文叢萃, 吳漢東 主編, 北京大學出版社, 2006年, 196頁.

간주하면 안된다. 환경법 CLE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그 센터의 직원이 아니고 환경법 CLE과목의 필요에 의하여 그 센터에서의 업무중 일부(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거나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 등)를 담당할 뿐이다. 그 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환경오염피해자보호센터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학생들이 그 센터로부터 사건을 공급 받아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CLE과목 수강 요건은 만족되는 것이고 그 센터의 사건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법률상담소는 일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7) 운영경비의 자금원 및 관리방식

경비의 관리는 중국 법률상담소가 갖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법률상담소가 중국에 들어 온 후 미국 Ford재단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Ford재단은 CLE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CCCLE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한적 자금만을 제공하고 있다.⁷¹⁾ 일부 학교는 여전히 COLUMBIA UNIVERSITY 공익법률연구소와 같은 사회단체 또는 공익기관으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⁷²⁾ 일부 학교의 법률상담소는 경비를 교내 예산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도 있다. 경비의 관리방식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CLE 활동만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CCCLE로부터 지원을 받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경비가 법률상담소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한다.

둘째, 교외 기관 또는 재단에서 받은 지원경비를 법학원 예산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법률상담소의 경비, 운영비용, 학생들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복사비, 자료비 등을 모두 법학원의 예산으로 처리한다.

71) 李正新, 試論法學教育的臨床培養--診所法律教育本土化困境及其應對, 教育法制, 2012年 第2期, 196頁.

72) 石賢平, 診所法律教育在高等法律職業教育具體應用中的問題與對策, 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CLE. 210頁.

위 방법중 후자인 통합 경비관리 방식은 CLE과목을 법학교육기관의 주도적인 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법률상담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³⁾

(3) 일본

1) 개요

일본은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미국식 로스쿨이 아닌, 법학부를 존치하고 기존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신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을 가미한 일본식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리걸클리닉 교과가 필수로 지정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70여개의 일본 로스쿨 중 60% 정도만이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형태도 와세다 로스쿨과 같이 법무법인을 설치한 학교부터 지방변호사회의 공설사무소와 연대하는 학교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⁷⁴⁾. 신사법시험(우리의 변호사시험과 유사)의 합격률이 극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각 로스쿨의 입장에서는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당장 신사법시험 합격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로스쿨 출범 초기에 설치했던 리걸클리닉도 내실있게 운영하기 힘들다. 와세다 로스쿨은 현재 일본 로스쿨 중 리걸클리닉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출범 초기와는 달리 신사법시험의 압박 등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커리큘럼 및 리걸클리닉의 규모 등 여전히 일본에서는 모범적인 리걸클리닉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73) 汪世榮 主編, 前掲書, 171頁.

74) 이하의 내용은 2011. 10. 와세다 로스쿨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열린 간담회 및 2012. 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일본 오사카 지역 로스쿨을 방문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로스쿨은 오카야마 로스쿨로 지역형 소규모 로스쿨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와세다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학교이나 학내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리걸클리닉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오사카 지방에 위치한 리츠메이칸 로스쿨, 간사이 로스쿨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 대학 모두 매년 100명 이상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형 로스쿨로서 신사법시험 합격률도 매우 높은 명문 대학에 속한다. 두 학교의 리걸클리닉 운영 방식도 상당히 유사하므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델로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2) 와세다 로스쿨⁷⁵⁾

와세다 로스쿨은 매년 2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형 로스쿨 중의 하나이다. 리걸클리닉 교육을 위하여 부설 법률 사무소인 “변호사 법인 와세다 대학 리걸클리닉(弁護士法人早稲田大学リーガル・クリニック)”을 설치하고 민사, 가사 복지, 형사, 노동, 헌법, 행정법, 외국인, 상사, 장애 등 9개 클리닉을 두어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각 클리닉은 ‘임상 법학 교육’이라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학점을 부여한다.

와세다 리걸클리닉에서는 실무가 교원·연구자 교원 2명 그리고 몇 명의 학생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실제 사건을 처리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 소장 등 서면의 작성 및 증인 심문, 당사자와의 협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도록 한다.

75) 와세다 로스쿨 homepage, 26 Dec. 2012

<<http://www.waseda.jp/law-school/jp/about/education/clinic02.html>>

클리닉에서 다루는 사건은 담당 실무 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형사 클리닉의 경우 동경 제2변호사회의 당번변호사 제도(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 제도와 유사)를 통하고 있다. 피의자가 당번변호사를 요청하면 변호사회가 와세다 리걸클리닉에 연락을 하고, 담당 교수가 담당 학생들과 함께 직접 피의자를 접견함으로써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

리걸클리닉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와세다 로스쿨이 부담하고 있다.

3) 오카야마(岡山) 로스쿨

오카야마 로스쿨은 매년 4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소형 로스쿨 중의 하나로, 오카야마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는 오카야마 공설 법률사무소(Public Law Office)를 두어 사회 복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카야마 로스쿨 내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소속된 300여명의 변호사 중 5명 가량이 오카야마 로스쿨 지부에서 근무하며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오카야마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변호사 1인과 학생 3-5인 정도가 팀을 이루어 직접 상담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일반 법률 상담 활동 이외에도 오카야마 로스쿨 지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로스쿨 수업 중 민사·형사 모의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리걸클리닉 운영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오카야마 로스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자력이 되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료를 받기도 하여 이를 운영비에 일부 충당하고 있다.

4) 카나가와 로스쿨⁷⁶⁾

카나가와 로스쿨은 요코하마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매년 50명의 학생을 뽑는 일본의 가장 작은 규모의 로스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육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카나가와 로스쿨의 임상법학은 크게 법률상담소에서 실무를 익히는 리걸클리닉 과정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파견을 보내는 엑스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걸클리닉 과정은 기본적으로 2학년 및 3학년 이수과목으로 운영되고 학점은 2학점이다. 리걸클리닉 교육은 학내에 설치된 무료 법률상담소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요코하마 변호사회의 법률상담소의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내의 법률상담소는 일반 민사상담, 자치체 행정상담, 외국인 인권상담을 하고, 요코하마변호사회 상담소는 주로 일반 민사사건을 상담하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이곳의 변호사는 로스쿨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리걸클리닉의 취지를 숙지하고 있다. 로스쿨과 요코하마 변호사회는 연간 수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5) 리츠메이칸(立命館) 로스쿨⁷⁷⁾

리츠메이칸 로스쿨은 매년 1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로스쿨로, 리걸클리닉 I, II(각 2학점)를 개설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클리닉은 리츠메이칸이 위치한 교토부 북부의 마이즈 루 시(舞鶴市)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가가 적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형태의 리걸클리닉은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이며, 변호사 과소 지역에 대한 새로운 법적 지원 방식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76)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에서 배우는 임상법학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86-87면.

77) 리츠메이칸 로스쿨 Home Page, 07 Jan. 2013

<http://www.ritsumei.ac.jp/acd/gr/hoka/special_legal_clinic120601.htm>.

실무교원 1인과 학생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어 1시간 가량 상담에 응하며, 현재 재판 또는 중재 절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리걸클리닉 I 은 민사문제(상속·파산·이혼·상해·교통사고·노동관계)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리걸클리닉 II는 ‘여성과 인권’이라는 부제로 운영되며 이혼, 가정폭력에 특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지역주민과의 상담 이전에 사전연수(비밀유지·상담매너강좌, 법률상담강의, 모의법률상담강의)를 받아야 하며, 상담 활동 후에는 사후연수로서 법률상담 내용 검토회를 갖게 된다.

6) 간사이(関西) 로스쿨⁷⁸⁾

간사이 로스쿨은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로스쿨로, 2·3학년을 대상으로 리걸클리닉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2학점). 간사이 대학은 법률 상담을 위하여 별도로 나카노 시마 무료법률상담센터(中之島センター)를 설치하고 있다. 월-목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실무 교수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1시간 가량 상담을 진행한다.

담당 교수는 상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대부분의 상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내용을 검토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상담활동 후에도 상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간사이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공개 법률 강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강좌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78) 간사이 로스쿨 Home Page, 07 Jan. 2013
<<http://www.kansai-u.ac.jp/ls/about/nakanoshima.html>>.

과정을 통해 리걸클리닉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독일

1) 개요

독일의 경우 지방분권적인 법학교육과 국가고시가 일체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각 주의 경우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주법에 따라 이러한 국가고시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리걸클리닉의 경우 협의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배우는 교육과정이고, 광의로는 현장학습과정(externship)을 포함하여 최광의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모든 교육과정, 실무법교육의 전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대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과정에서 1차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이라든지, 그 후 3개월간의 실습기간을 통한 실무실습,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1차 국가고시 합격 후의 24개월간의 실무수습 등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걸클리닉과 유사한 교육이 독일의 법과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리걸클리닉 교육은 하노버 대학과 뒤셀도르프 대학,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하노버 클리닉은 미국의 리걸클리닉을 그 모델로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리걸클리닉의 대상이나 접수하는 사건의 영역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리걸클리닉 중 대표적으로 하노버 대학, 뒤셀도르프 대학, 베를린-뉘른베르크 대학, 함부르크 대학에서의 리걸클리닉 현황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하노버 대학⁷⁹⁾

하노버 대학 리걸클리닉(Juristische Klinik)의 목적은 법적 상담에 관한 실무(Juristische Beratungspraxis)를 익히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장래 직업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노버 대학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시행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행하며, 그 운영은 교과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담 기본 입문과정과 구체적인 법률 실무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사안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고, 이를 감독하는 감독자에게(Volljuristen)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고, 지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상 사건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소가가 750유로를 초과하거나 전문변호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제외된다.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변호사의 의견을 대체할 수 없다.

2) 뒤셀도르프 대학⁸⁰⁾

뒤셀도르프 법과대학의 리걸클리닉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법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당 절차를 감독하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게 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학생들은 문헌 및 판례조사, 법률실무의견 작성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히며, 그 결과를 피상당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리걸클리닉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은 일정한 사건으로 제한되는데, 소가 700유로 이상의 사건은 제외된다. 피상당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뒤셀도르프 대학의 학생 외에도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하노버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법적 의견을 대신할 수 없으며, 소송대리는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79) *Juristische Fakultät-Legal Clinic-Juristische Beratungspraxis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uni-hannover.de/legalclinic.html>> .; *Juristische Fakultät-Weitere Information Home Page*, <<http://www.jura.uni-hannover.de/1500.html>> .

80) *Universität Düsseldorf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hhu.de/en/hilfe.html>> .

3) 베를린 훔볼트 대학⁸¹⁾

베를린 훔볼트 법과대학에서도 리걸클리닉 관련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인권법(Human Rights) 영역에서 처음 활동을 개시하여, 현재는 소비자법에 관한 리걸클리닉(Consumer Law Clinic)과 인터넷 법 리걸클리닉(Internet Law Clinic)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은 각각의 클리닉에서 실무적인 경험과 대학의 강의를 상호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실무교육을 통한 법학교육의 심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을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연관시킨 총체적인 학습 및 법률문헌조사와 법률문장작성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학습하게 된다.

4) 함부르크 대학⁸²⁾

함부르크 대학은 하버드 대학의 인터넷과 사회에 대한 Berkman Center의 영향을 받아 사회 미디어에 대한 법률 클리닉(Law Clinic) 활동을 개시하였다. 학생들은 경험 있는 실무가의 감독과 지도를 통해 클리닉에 접수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과 감독 실무가 사이의 협조를 통해 법률실무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클리닉의 대상은 함부르크 대학 학생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리닉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4학기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소정의 양식을 함부르크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 최소 3개월 이상은 리걸클리닉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클리닉 활동은 3~4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이루어지며, 각 팀마다 이를 감독하는 실무가가 배정된다.

81)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ät Home Page*, 5 Jan. 2013,

<http://lawclinic.rewi.hu-berlin.de/> .

82) *Media law Clinic-Fakultät für Rechtswissenschaft-Universität Hamburg*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uni-hamburg.de/medialawclinic/> .

제3절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내용 등

I. 서론

위에서 본 리걸클리닉의 개념과 역사, 각 국의 구체적 운영현황 등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내용, 담당교원, 수업의 구조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II. 리걸클리닉의 목표

1. 체험을 통한 학습성과의 증진

리걸클리닉은 체험을 통한 학습방법(learning by experience)이다. 즉 리걸클리닉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뢰인을 직접 만나 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⁸³⁾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학습의 기본은 변호 기술의 습득(acquisition of lawyering skills)이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변호 기술은 법이론 교육과 달리 체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에 모자람을 깨닫게 되어 실무뿐 아니라 법이론 공부에 더 매진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받고 발전하게 된다(student motivation and development). 예일대 로스쿨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실체법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은

83) Kenneth R. Kreilling, *Clinical Education and Lawyer Competency: The Process of Learning to Learn from Experience through Properly Structured Clinical Supervision*, 40 Md. L. Rev. 284 (1981).

대부분 실체법에 대한 기초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뒤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 사고에 따라 기초법에 관한 학습이 끝난 뒤인 2학년 이후 리걸클리닉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예일대 로스쿨은 1학년 2학기부터 리걸클리닉 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실체법에 관한 이론 수업과 리걸클리닉을 동시에 진행할 때 학생들이 양쪽 수업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⁸⁴⁾ 이러한 예일대 방식은 카네기 재단에서 발표한 법학교육개혁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⁸⁵⁾

리걸클리닉은 또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무 및 이론 교육과 함께 변호사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 and responsibility) 교육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학생들은 실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직업윤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윤리 문제를 고민하고,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클리닉 수업을 활기차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것은 교실에서 실시하는 법조윤리를 체화하는 과정이다.

2. 사회정의 실현 및 지역사회 봉사

리걸클리닉은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정의의 실현(serving social justice)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 리걸클리닉의 역사를 살펴보면, 리걸클리닉은 단순히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예일대 로스쿨의 경우 1920년대 후반 학생들이 학교가 소재한 뉴 헤이븐 지방에서 법률구조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리걸클리닉의 기원이다.⁸⁶⁾ 학생들은 체험을 통한 학습 외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community service)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리걸클리닉에 임하였던 것이다.

84) 사법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전계보고서, 18면.

85) William M. Sullivan, et. al., *EDUCATING LAWYERS* (2007).

86) Holland, supra note 15 at 510.

이러한 예는 다른 대학 로스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버클리대 로스쿨의 경우 1988년 학생들이 인근 낙후지역에 지역법률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를 설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리걸클리닉을 시작하였다. 지금도 개설된 10개 클리닉 수업 중 7개가 지역법률센터에서 실시되고, 3개가 로스쿨에서 실시되고 있다.

리걸클리닉은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분명한 목적으로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리걸클리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지원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⁸⁷⁾ 그렇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 리걸클리닉은 일반 교과목과 달리 사회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리걸클리닉은 이론 수업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과 학생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3. 소결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여 리걸클리닉의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면, ① 체험을 통한 학습, ② 변호 기술의 습득, ③ 동기부여 및 자기발전, ④ 직업윤리의 습득, ⑤ 사회정의를 실현, ⑥ 지역사회 봉사라고 하겠다. 실제로 개설되는 리걸클리닉은 개설 취지 및 다루는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위 요소들을 조금씩 담고 있다.

87) Stephen Wizner, *Beyond Skills Training*, 7 Clinical L. Rev. 327 (2001).

Ⅲ. 리걸클리닉의 내용

리걸클리닉의 학습 내용은 교육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 목표를 체험을 통한 변호 기술의 효율적 학습에 둔다면, 리걸클리닉의 학습 내용은 변호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1992년 MacCrate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술과 가치, 미국 리걸클리닉협회(CLEA)의 2007년 『Best Practices』의 주요 내용이 주요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만약 리걸클리닉의 학습 목표를 학습동기 부여에 두었다면, 리걸클리닉의 학습 내용은 순수한 변호 기술보다는 이론교육을 보완하고 심화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성격의 교육이 실시되게 된다. 만약 리걸클리닉의 학습 목표를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에 둔다면, 봉사활동이 주요 학습 내용에 포함된다. 리걸클리닉은 대부분 세 가지 교육 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세 요소의 비중이 다를 뿐이다.

미국 로스쿨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걸클리닉의 교육 내용은 위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담고 있다. 예컨대 버클리 대학의 리걸클리닉 교육 내용을 보면, 클리닉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3가지 종류와 지역커뮤니티에 개설된 클리닉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에서 실시하는 7가지 종류로 구성되었다.⁸⁸⁾ 전자는 전임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사건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호 기술 및 학습 동기의 비중이 높고, 후자는 학생들이 변호사와 함께 영세민을 위한 소송 등을 대행하는 클리닉으로 봉사 활동 및 변호 기술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리걸클리닉은 변호 기술의 습득과 봉사 정신의 함양을 중시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등 전통적인 교과목이 주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론 교수가 심화 학습과정으로 클리닉을 개설하면서, 다양한 교과목을 클리닉으로 개설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가 스탠포드 로스쿨의 대법원 소송 클리닉(Supreme Court Litigation Clinic)이다. 2004년 개설된 대법원 소송 클리닉은 성공률이 1%도 안 되는 대법원 상고허가(certiorari)를 여러 차례 성공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⁸⁹⁾

88) *Berkeley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berkeley.edu/clinics.htm>> .

스탠포드 대학의 성공적인 클리닉 운영은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줘 2006년 가을 예일대 로스쿨이 대법원 변호 클리닉(Supreme Court Advocacy Clinic)을, 텍사스대(오스틴) 로스쿨이 대법원 클리닉(Supreme Court Clinic)을, 버지니아대 로스쿨이 대법원 소송 클리닉(Supreme Court Litigation Clinic)을 개설하였으며, 2007년 가을에는 하버드대 로스쿨이 대법원 클리닉(Supreme Court Clinic)을, NYU 로스쿨이 대법원 소송 클리닉(Supreme Court Litigation Clinic)을 개설하는 등 일류 로스쿨들이 클리닉 개설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걸클리닉 수업의 일부를 강의실에서 실시함으로써 임상수업과 이론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경향도 보인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클리닉 교육에 강의식 교육을 결합하여 운영한다.⁹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과 교수가 이론, 실무,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클리닉 교과목이 아닌 내용을 클리닉으로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독립 클리닉 프로그램(independent clinical work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⁹¹⁾ 독립 클리닉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 변호사와 후원 교수를 선임한 후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걸클리닉은 민사·형사·가사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먼저 편성하여 실시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및 시설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법 임상교육 교과목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순서를 거꾸로 하여, 전문법 교과목에 교원 및 시설 등을 우선 배정할 경우 리걸클리닉 교육은 전문 변호기술 및 이론교육의

89) Michael Falcone, *Stanford Law Students Get Early Supreme Court Duty*, (15 March 2006).; *The Newyork Times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nytimes.com/2006/03/15/education/15stanford.html>>.

90) *Harvard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faq.htm>> 참조.

91) *Harvard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students/independent.html>> 참조.

교육방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

리걸클리닉은 변호사로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교수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교수가 변호사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리걸클리닉이 실시되고 있다. 리걸클리닉을 담당하는 교원을 이론 교원과 구분된다. 리걸클리닉은 실무와 로스쿨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클리닉 담당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무담당 교수는 이론담당 교수보다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대우도 좋지 않다. 보통 실무담당 교수에게는 법학교수(Professor of Law)라는 호칭이 아니라, 실무법학교수(Clinical Professor of Law)라는 별도의 명칭을 붙여진다. 실무담당 교수의 신분도 이론교수와 같은 정년 트랙이 아니고, 별도의 비정년 트랙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정년을 보장받는 실무교수는 이론과목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걸클리닉 교수들이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술논문 발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리걸클리닉 교수는 이론교수와 달리 학기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논문 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실무교수와 이론교수 간 차별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실무출신 교수의 이론교수화 경향이 문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무 감각이 떨어지고, 다른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론교과목을 강의하고 관련논문을 작성하면서 점차 이론교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의 경우 변호사를 휴직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교수가 변호사로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지만, 공익 활동까지 제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외부 실무가를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교원에게 리걸클리닉을 담당시키는 것이 학습효과도 높고, 리걸클리닉의 고비용 구조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론교원과 실무교원의 임용 트랙을 구분하는 방안도 도입할 가치가 있다. 이론교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및 승진 요건이 실무교원에게 요구되는 요건과 동일할 수는 없다. 실무교원은 현장감이 중요하므로 리걸클리닉 담당자를 법조실무 현장에서 쉽게 충원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V. 리걸클리닉 수업의 구조

리걸클리닉의 이수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리걸클리닉을 로스쿨 교육의 완결관으로 이해할 경우 법학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의뢰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의 체계적 학습을 위해서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변호사의 상을 심어주고, 실무를 직접 해봄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초교육을 마친 상태에서 바로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²⁾

미국의 경우 대부분 로스쿨은 학생들로 하여금 2, 3학년 때 임상교육을 선택하

92)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 시간에 실제 사건을 다루자는 주장, 즉 1학년 때부터 클리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Micheal A. Millemann & Steven D. Schwinn, *Teaching Legal Research And Writing With Actual Legal Work: Extending Clinical Education into The First Year*, 12 *Clinical L. Rev.* 441 (2006).

도록 권장하고 있다. 1학년 교과목은 거의 대부분 졸업필수과목으로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전형적인 로스쿨 1학년 과목 및 학점은 계약법 6학점, 민사소송법 6학점, 재산법 4학점, 불법행위법 4학점, 형법 3학점,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 4학점,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4학점 등 7과목 30학점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교과목에서 크게 탈피한 곳이 예일대 로스쿨이다. 예일대 로스쿨은 1학년 1학기만 필수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1학년 2학기 이후는 학생 선택에게 맡겼다. 따라서 임상교육 역시 1학년 2학기부터 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예일의 경우 클리닉 수업의 참여를 권장하여, 재학생의 80% 정도가 졸업 전까지 클리닉 수업을 수강한다고 한다.⁹³⁾

클리닉 수업의 경우 무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학기당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클리닉 수업학점과 졸업 전까지 이수 가능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경우 학기당 클리닉 학점은 최소 2학점, 최대 4학점이며, 졸업까지 최대 12 클리닉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클리닉 학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수업학점과 달리 실제 투입한 시간을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주 10시간을 2클리닉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습방법으로서 리걸클리닉은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것인데, 실제 사건은 학기에 맞춰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에서 보면 전체 사건의 일부에만 관여한 셈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은 변호 기술의 전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실 수업이다. 학기마다, 또 학생마다 담당하는 내용이 균질하지 않지만, 교실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수와 소통하면서 학습 내용을

93) *Yale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yale.edu/admissions/studyoflawatyls.asp>> 참조.

어느 정도 균질화시킬 수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에 실제 사건을 종결되지 않은 경우 계속 프로그램(continuing clinical work program)에 참가하여 클리닉에 참가할 수 있다.⁹⁴⁾

리걸클리닉에서 배우는 변호 기술을 평가해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변호 기술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 교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해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리걸클리닉의 학습목표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의문이다.⁹⁵⁾

그렇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에서의 평가는 일반 교과목에서의 평가와 달라야 한다. 첫째 중요한 것이 학생 스스로의 자율평가라고 하겠다. 클리닉 수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 실무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실수를 왜 했는지 자문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일지를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한 후 학기말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⁹⁶⁾

리걸클리닉은 팀을 이뤄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동료 학생의 평가가 중요하다. 교수가 파악하지 못한 점을 동료 학생들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리걸클리닉은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학습하는 과정이므로 그 사건의

94) *Harvard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students/continuing.html>>참조.

95) 이에 대해서는 Lawrence M. Grosberg, *Should We Test for Interpersonal Lawyering Skills?*, 2 *Clinical L. Rev.* 349 (1996); Margaret Martin Barry, et. al., *Justice Education and the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of Study Performance in Legal Clinics Workshop 26-27, (July 2004).

96) Norman Fell, *Development of A Criminal Law Clinic: A Blended Approach*, 44 *Clev. St. L. Rev.* 275 (1996).

당사자, 즉 의뢰인도 훌륭한 평가자가 될 수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의뢰인에게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해왔는지 평가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의뢰인이다. 결국 리걸클리닉 평가는 교수 평가, 학생의 자율 평가, 동료 학생의 평가, 의뢰인 평가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리걸클리닉은 부실 변호와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모든 변호 활동은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지도 교수와 상의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도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과의 대화로부터 편견을 형성하는 의뢰인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로스쿨은 학생의 부실변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⁹⁷⁾

이처럼 리걸클리닉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방법이다. 리걸클리닉의 학생과 교수의 비율은 이론수업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한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리걸클리닉에서 교수대 학생 비율이 1대 8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론수업은 교실에서만 교육하기 때문에 강의실 유지비 외에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지만, 실무수습은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의뢰인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 부담은 더욱 크다. 미국에서 한 때 유행하던 교도소 클리닉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유 중 하나도 고비용에 있다.

97) 사법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전계보고서, 56면.

제3장 한국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리걸클리닉 운영현황을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제2절에 있는 [설문1-1 내지 7] , [설문2-1 내지 14], [설문3-1 내지 9], [설문4], [설문5], [설문6], [설문7] 등 총 34항목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제2절에서는 그래프를 통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제2절의 운영현황에 기초하여 한국 리걸클리닉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출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제4장에서의 한국 리걸클리닉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리걸클리닉 운영현황

본 절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1-1 내지 7] , [설문2-1 내지 14], [설문3-1 내지 9], [설문4], [설문5], [설문6], [설문7] 등 총 34항목의 설문조사에 따른 답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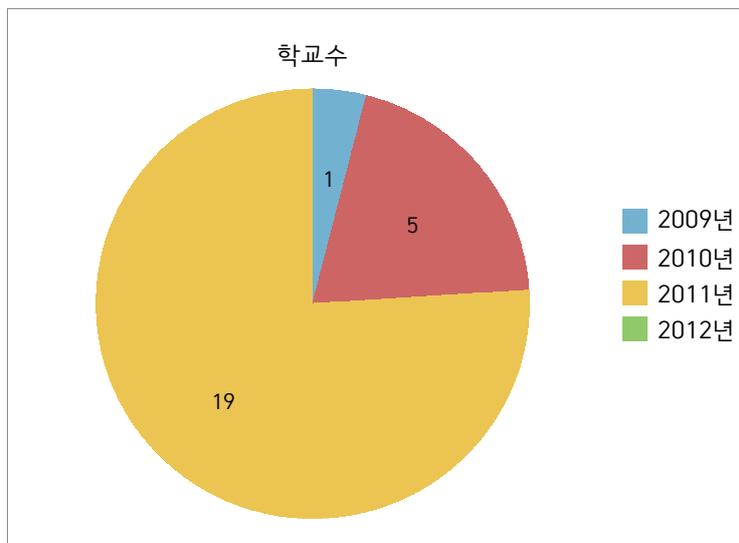
[설문1-1] 현재 귀 학교의 리걸클리닉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연월일
특정 要)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활동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개교 이래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여 활동하였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설립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학교 수	1	5	19	0



[그림 1-1] 리걸클리닉 활동 개시 연도

[설문결과 분석]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의 학교의 경우 2010년과 2009년에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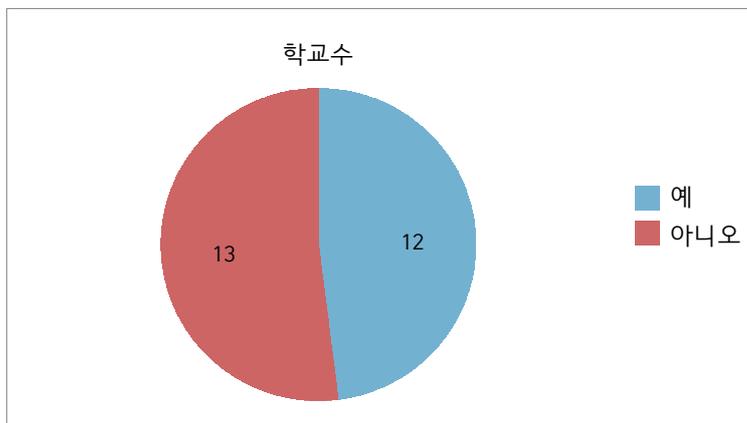
[설문1-2] 귀 학교의 졸업요건·특성화 과정 이수요건에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 수강 또는 관련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교육의 활성화와 실질화를 위해 해당 학교의 졸업요건이나 특성화 과정 이수요건에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을 수강하거나 리걸클리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졸업요건 포함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12	13



[그림 1-2] 졸업요건 포함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졸업요건이나 특성화 과정 이수 요건에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을 수강하거나 리걸클리닉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참여도나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리걸클리닉 교육의 활성화 내지 실질화에 어느 정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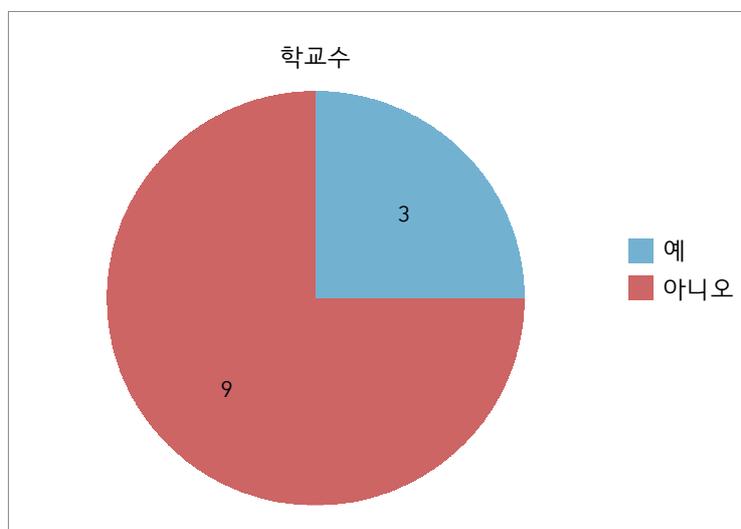
[설문1-3] 위 2)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 수강 또는 관련 활동이 졸업필수요건·특성화 과정 이수 필수요건입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의 수강이나 리걸클리닉 활동을 졸업요건 혹은 특성화 과정 이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요건이 필수요건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졸업필수요건/ 특성화 과정 이수 필수요건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3	9



[그림 1-3] 졸업필수요건/ 특성화 과정 이수 필수요건 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을 수강하거나 리걸클리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졸업요건 혹은 특성화 과정 이수 요건으로 규정하여도 이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1-4] 위 2)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ex. 리걸클리닉 활동 또는 법률 상담 5건 이상 수행 시 실무교과 1학점 · 공익봉사 1학점 부여 등)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 수강 혹은 리걸클리닉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학교에 따라 다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① 3학년 2학기 필수과목인 실습과정(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리걸클리닉 활동을 20시간 이상해야 한다거나, ② 특성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익봉사 1학점 취득 필요. 일정 수 이상의 법률상담사건 처리시 공익봉사 1학점 부여, ③ 필수과목인 실습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 무료법률상담참여와 무료소송구조활동, 실무수습과정참여를 일정 시간 이상 요구하는 경우, ④ 법률상담실무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연중법률상담 2회 + 출장상담 1회 등과 같은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결과 분석]

설문에 응답한 학교별로 다양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표준적인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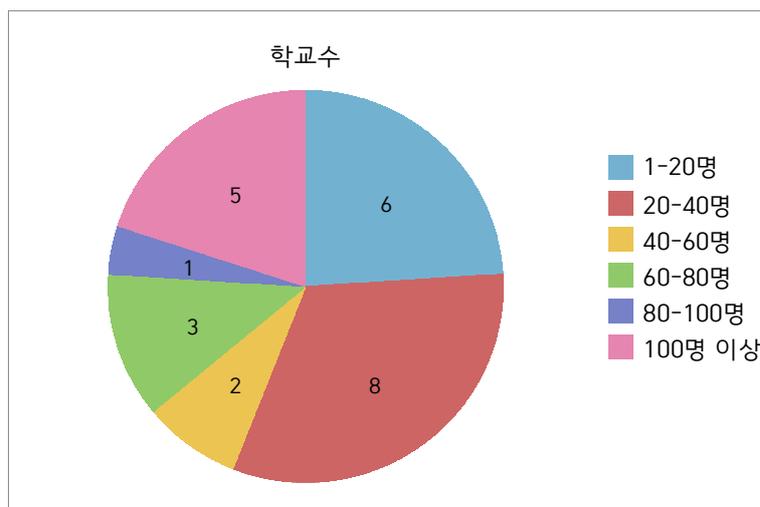
[설문1-5] 귀 학교 리걸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학생 수, 학년 별 명수 및 비율)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활동이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참여학생 수	1-20명	20-40명	40-60명	60-80명	80-100명	100명 이상
학교 수	6	8	2	3	1	5



[그림 1-5] 참여학생 수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고려할 때 리걸클리닉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상당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1-2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도 다수 있는 것을 볼 때 학교별로 그 참여정도가 저조한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1-6] 2012년 1월 ~ 10월 말까지 귀 학교의 법률상담건수는 몇 건입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상담건수	1-20건	20-40건	40-60건	60-80건	80-100건	100건 이상	파악불가
학교 수	2	7	7	3	1	2	2



[그림 1-6] 법률상담건수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20-60건 정도의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1-20건 정도의 비교적 저조한 사건접수를 하는 곳도 있었으며, 사건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어 사건의 접수 처리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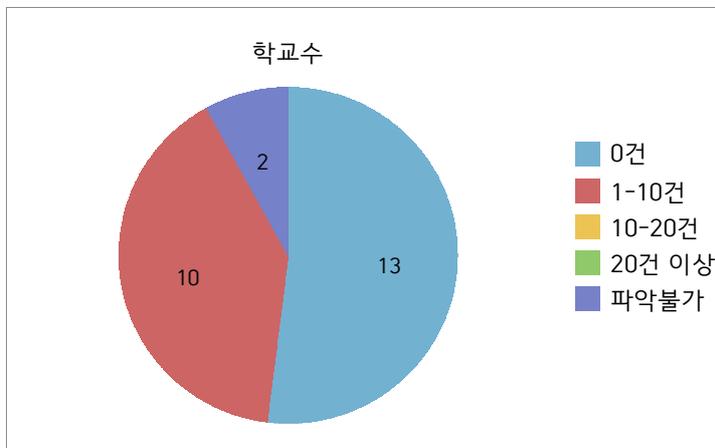
[설문1-7] 위 6)의 법률 상담 사건 중, 실제 소송 수행 사건 및 승소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활동이 단순한 법률상담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법을 체험하고 실제로 소송수행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리걸클리닉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결과]

승소한 사건 수	0건	1-10건	10-20건	20건 이상	파악불가
학교수	13	10	0	0	2



[그림 1-7] 승소한 사건 수

[설문결과 분석]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그 중 승소한 사건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에서는 사건 접수·처리와 관련한 업무 처리 절차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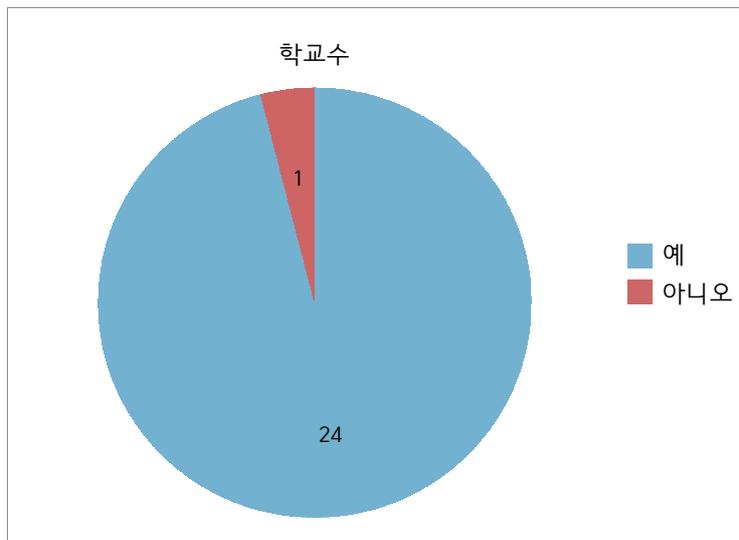
[설문2-1] 현재 귀 학교가 운영 중인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임상법무실습 등)이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운영 혹은 리걸클리닉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설문결과]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 존재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24	1



[그림 2-1]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 존재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1곳을 제외한 모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2-2] 위 1)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어떠한 과목이 있으며, 각 과목은 몇 학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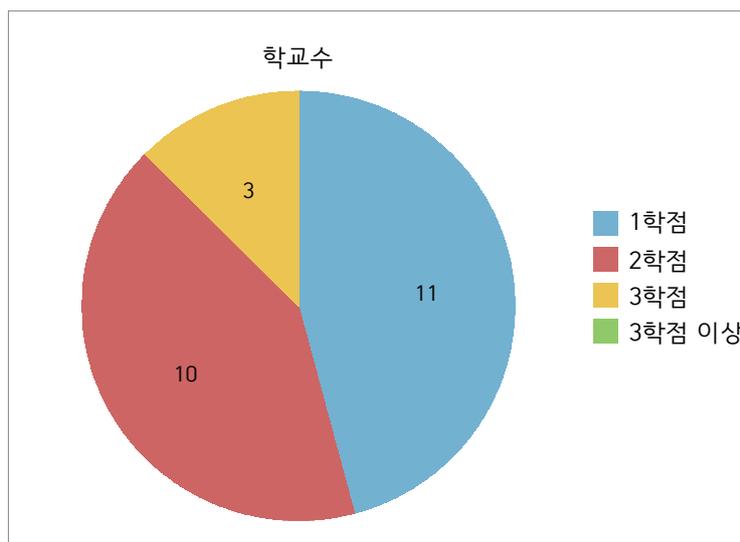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이 전체 학사과정에서 몇 학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설문 결과 조사대상 학교 모두 ‘리걸클리닉’, ‘로여링’, ‘임상법무실습’, ‘법률클리닉’, ‘법률상담실무’ 등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을 학사과정에 따라 여러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다수(5개교) 존재하며, 학교별로 과목별 이수학점은 최소 1학점에서 최대 3학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수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3학점 이상
학교 수	11	10	3	0



[그림 2-2] 이수학점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을 적게는 1과목에서 많게는 여러 과목으로 편성하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목별 이수학점의 경우도 다양하여 1학점 내지 3학점 정도의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으나, 여러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총 이수학점을 합하면 한 과목만을 이수하게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대비하여 이수학점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어 전체 학사과정에 있어 리걸클리닉 과목을 몇 학점 정도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문2-3] 위 2)의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의 구성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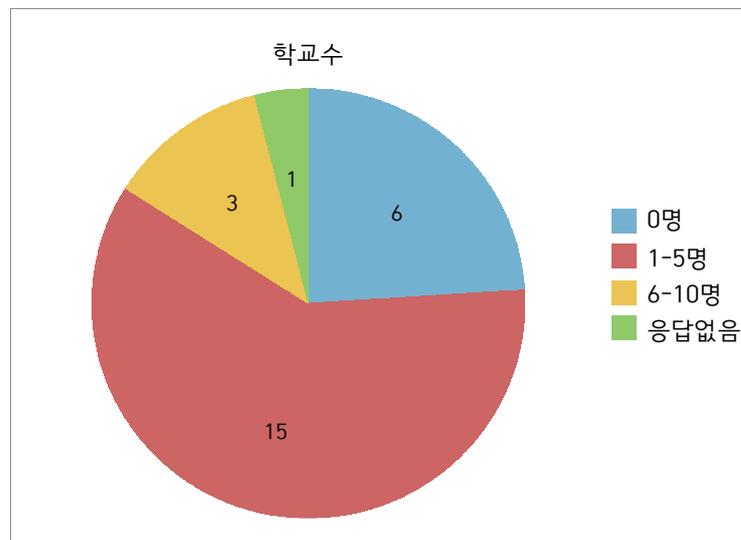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해당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의 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설문결과]

- 교내 교수의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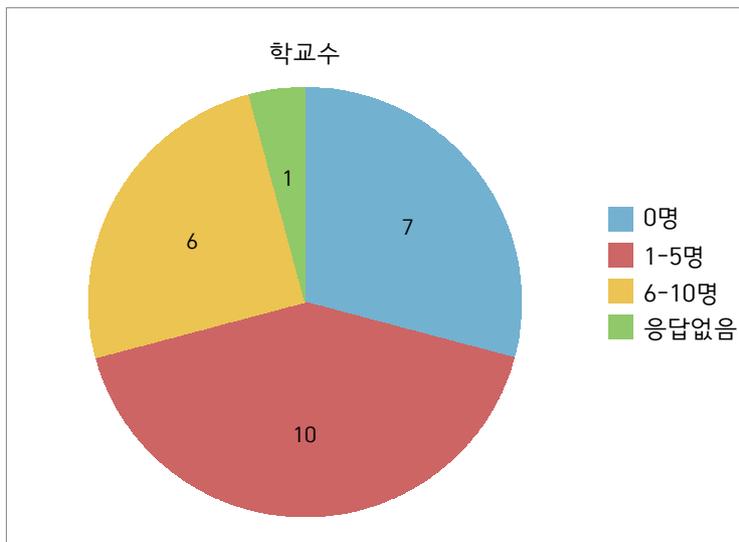
교내 교수 참여 수	0명	1-5명	6-10명	응답없음
학교 수	6	15	2	1



[그림 2-3] 교내 교수의 참여 정도

- 교외 인력의 참여 정도

교외 인력 참여 수	0명	1-5명	6-10명	응답없음
학교 수	7	10	6	1



[그림 2-3] 교외 인력의 참여 정도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교내 인력과 교외 인력을 조합하여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부의 경우 교내 인력만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하거나 혹은 교외 인력만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리걸클리닉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보다는 교내 인력과 교외 인력을 조합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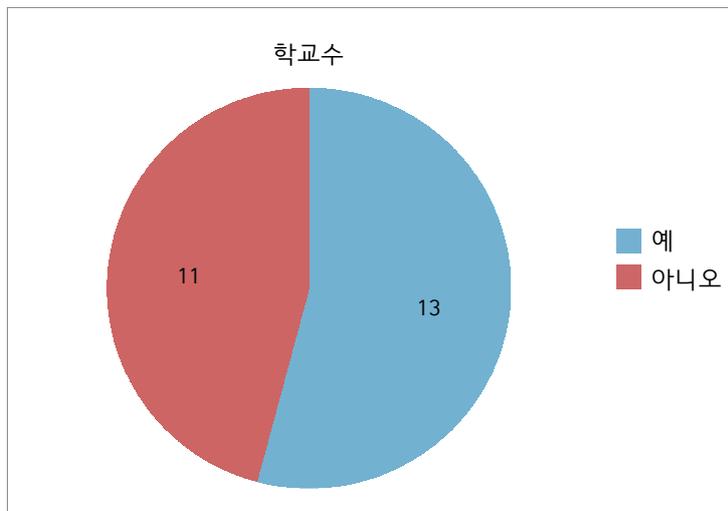
[설문2-4]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에 학점 취득 요건·최대 이수 학점 등의 제한이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강만으로 학점을 인정하는지를 파악하고 최대 이수학점 등의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학점 취득 요건/ 최대 이수 학점 제한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13	11



[그림 2-4] 학점 취득 요건/
최대 이수 학점 제한 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학점 취득 요건이나 최대 이수 학점의 제한을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곳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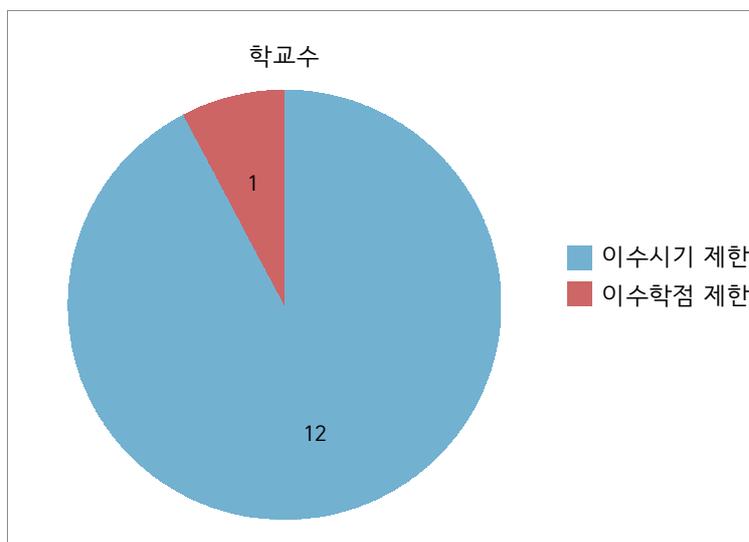
[설문2-5] 위 4)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니까? (이수시기 혹은 이수학점의 제한)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학점 취득 요건이나 최대 이수 학점의 제한을 두고 있는 법학전문대
 학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이나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이수 제한의 내용	이수시기 제한	이수학점 제한
학교 수	12	1



[그림 2-5] 이수 제한의 내용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거의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수시기의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리걸클리닉의 특성상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그 대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적절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설문2-6]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학점 부여 방식은 어떠합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학점부여 방식	P/F 방식	상대평가	혼합방식
학교 수	24	0	0



[그림 2-6] 학점부여방식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P/F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리걸클리닉 수업의 특성상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타당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설문2-7] 위 6)에서 ‘② 상대평가’ 라고 대답한 경우, 학점 부여 기준은 어떠한지?

- ① 다른 과목에 준하여 부여
- ② 별도의 기준에 의함 (별도의 기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학점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설문결과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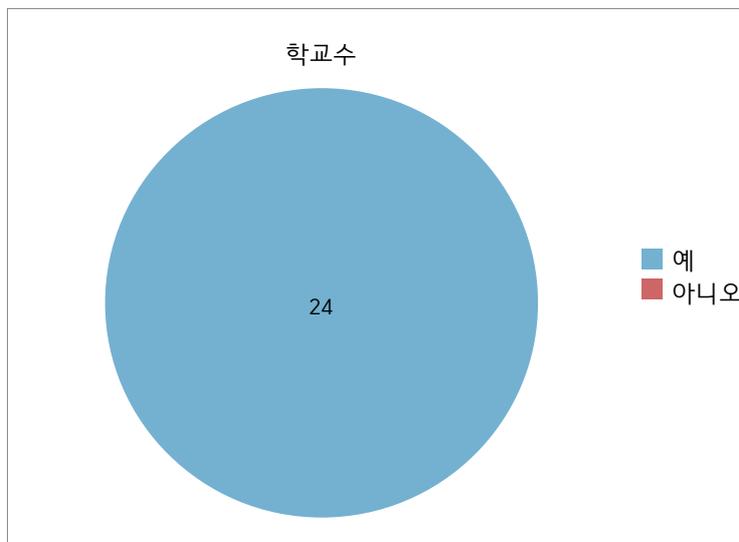
[설문2-8]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단순히 가상의 교과서 사례를 통한 훈련만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결과]

실제 사건의 취급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24	0



[그림 2-8] 실제 사건의 취급 여부

[설문결과 분석]

응답한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리걸클리닉 교육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태도라고 판단된다.

[설문2-9] 위 8)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수업에서 다루는 사건은 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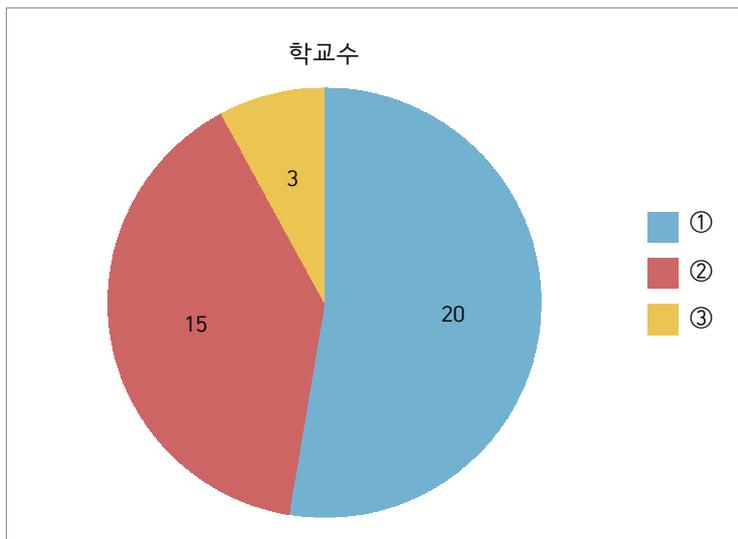
- ① 담당 교수(외부 변호사 포함)가 제공
- ② 법률 상담소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다룸
- ③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의 대상으로 삼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사건의 제공 방식	① (담당 교수가 제공)	② (법률 상담소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	③ (기타)
학교 수	20	15	3



[그림 2-9] 사건의 제공 방식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과목의 담당 교수(교내/교외 불문)가 사건을 제공하거나 교내의 법률상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접수된 사건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내 기관인 법률상담소와 같은 곳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당 교수가 사건을 제공하는 방식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리걸클리닉에서 다루는 사건의 접수와 제공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기타의 답변에는 다른 교수들의 사건 추천이나 동문회 등 외부기관에의 의뢰, 변호사 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사건수임 제의를 받는 등의 답변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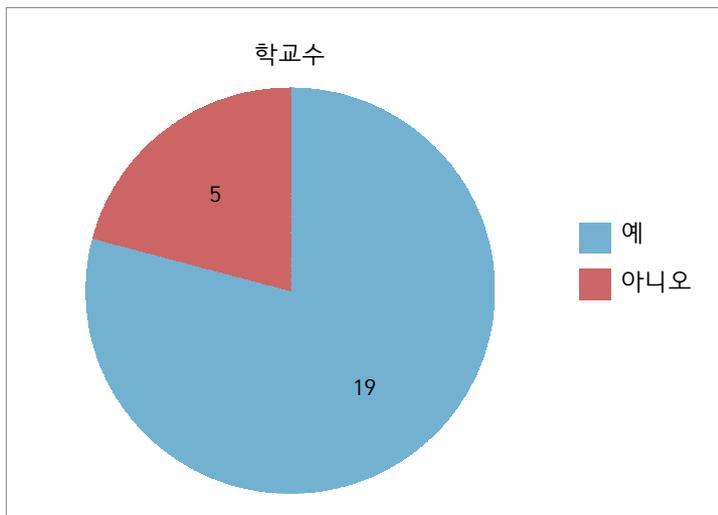
[설문2-10] 위 8)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실제 사건을 다룬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단순히 사안의 분석 내지는 자문 정도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소송수행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19	5



[그림 2-10] 소송수행 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실제 소송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자문 내지는 상담정도의 기능에만 머무르는 곳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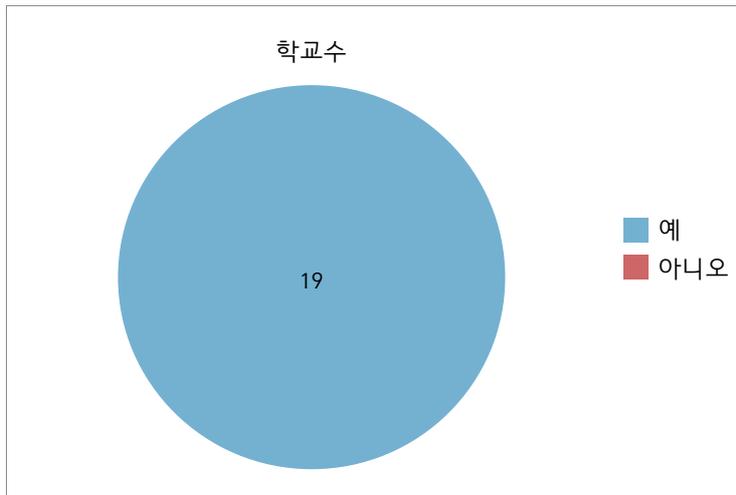
[설문2-11] 위 10)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경우, 외부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실제 소송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의 형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외부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19	0



[그림 2-11] 외부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 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실제 소송을 수행한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 모두는 외부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실제 소송을 수행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실무교원이라고 하여도 소송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실무교원을 중심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설문2-12] 위 8)에서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 어떤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응답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하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상담에 대한 답변이나 외부 변호사들의 소송수행보조, 과거 수행사건의 기록 등을 수업에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결과 분석]

실제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과거 기록에 대한 스터디 혹은 법률상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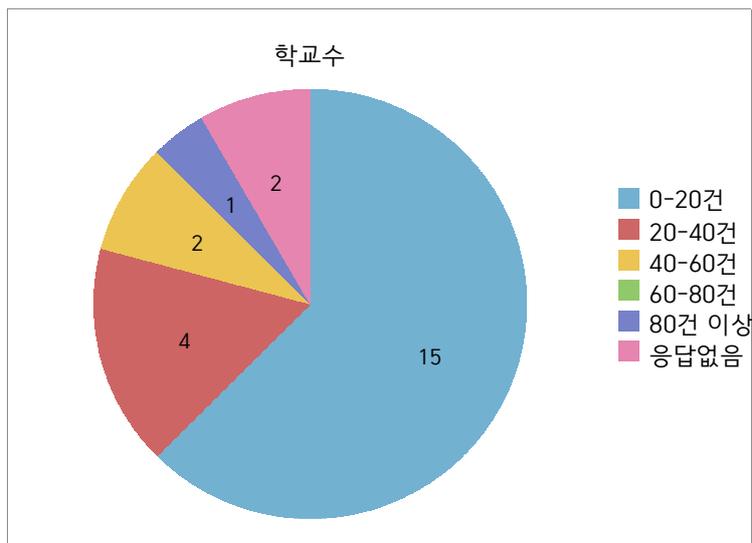
[설문2-13]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에서 한 학기에 다루는 사건의 수는 몇 건입니까?
(2012년 1학기 기준)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에서 한 학기에 다루는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결과]

사건 수	0-20건	20-40건	40-60건	60-80건	80건 이상	응답없음
학교 수	15	4	2	0	1	2



[그림 2-14] 한 학기에 다루는 사건 수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한 학기에 20건 내외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하고 8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답변한 곳도 존재하였는데,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규모와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 리걸클리닉 교육을 위해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사건 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2-14]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수강생은 몇 명이며, 학년 별 구성은 어떠합니까? (임상법무실습1 - 3학기 4명 5학기 4명 등; 2012년 1학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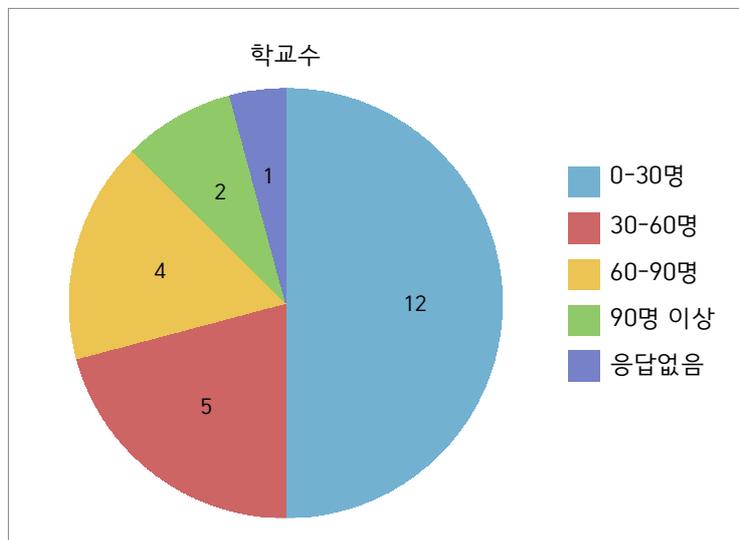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그 기준으로 수강생이 어느 정도인지와 학년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채택하였다.

[설문결과]

-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의 수강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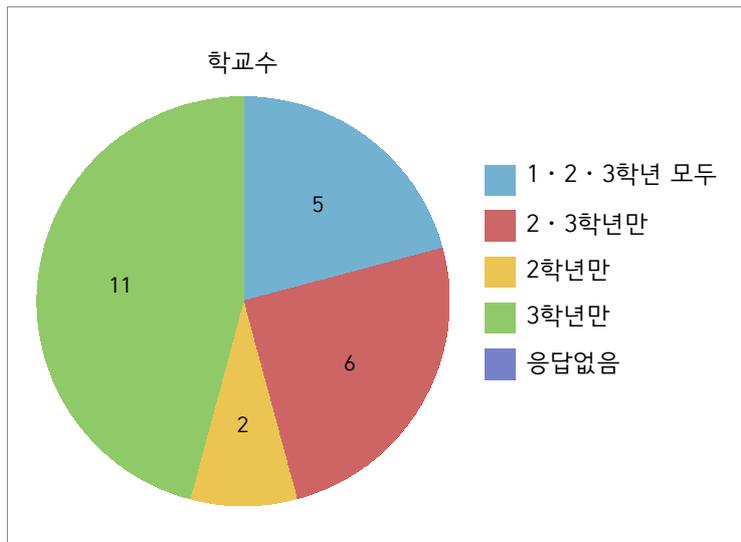
사건 수	0-30명	30-60명	60-90명	90명 이상	응답없음
학교 수	12	5	4	2	1



[그림 2-14]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 수강생 수

- 학년별 구성

학년별 구성	1·2·3학년 모두	2·3학년만	2학년만	3학년만	응답없음
학교 수	5	6	2	11	0



[그림 2-14]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 수강생 수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과반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60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규모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년별 구성을 보면 3학년 학생만으로 제한하는 곳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3학년 학생만으로 제한하는 곳을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리걸클리닉 수업의 특성상 저학년 학생보다는 고학년 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고학년 학생의 경우 변호사 시험 등의 준비로 인해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학년 2학기부터 자율적인 참여를 인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3-1] 교내에 법률상담소(기타 리걸클리닉 관련 활동하는 단체이면 상담소, 학회 등 어떠한 형태이든 관계없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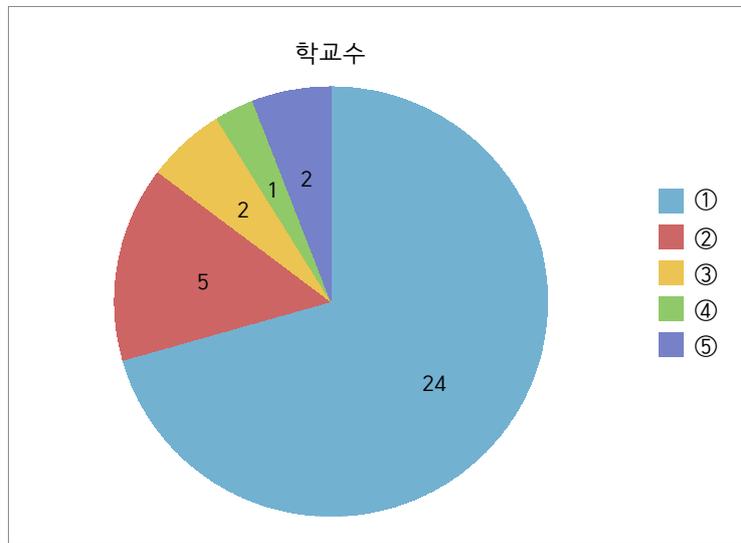
- ① 교내 법률 상담소
- ② 외부단체와 연계된 상담소
- ③ 학회
- ④ 일회성 상담 부스 설치
- ⑤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활동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상시 마련된 법률상담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결과]

법률상담소 설치형태	① (교내)	② (외부단체 연계)	③ (학회)	④ (일회성 상담 부스)	⑤ (기타)
학교수	24	5	2	1	2



[그림 3-1] 법률상담소 설치형태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교내에 법률상담소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리걸클리닉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외부 단체와 연계하거나 상담부스 등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리걸클리닉 활동을 전개하는 곳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기타의 답변에는 MOU를 체결한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상담을 접수하는 방법이나 법률상담사이트를 통하여 들어오는 상담을 접수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였다.

[설문3-2] 법률상담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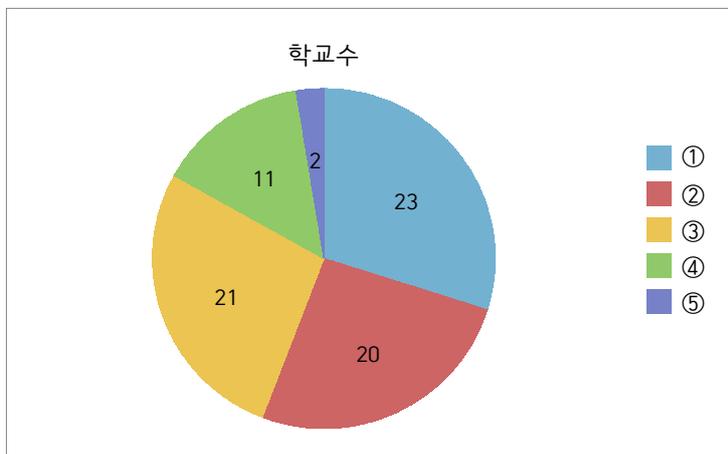
- ① 전화
- ② 인터넷 홈페이지
- ③ 방문접수
- ④ 외부기관 출장상담
- ⑤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법률상담을 접수하는 루트를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하고 있다면 얼마나 다양한 루트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실제 리걸클리닉의 운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설문결과]

법률상담 접수방법	① (전화)	② (인터넷)	③ (방문접수)	④ (외부기관 출장)	⑤ (기타)
학교 수	23	20	21	11	2



[그림 3-2] 법률상담 접수방법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 전화와 인터넷, 방문접수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외부기관의 출장을 통하여 사건을 접수한다는 답변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그 외 기타에는 이메일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접수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설문3-3] 법률상담 접수에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3-3-1) 예 / 아니오

3-3-2) 위의 3-1)에서 “예” 라고 답하셨다면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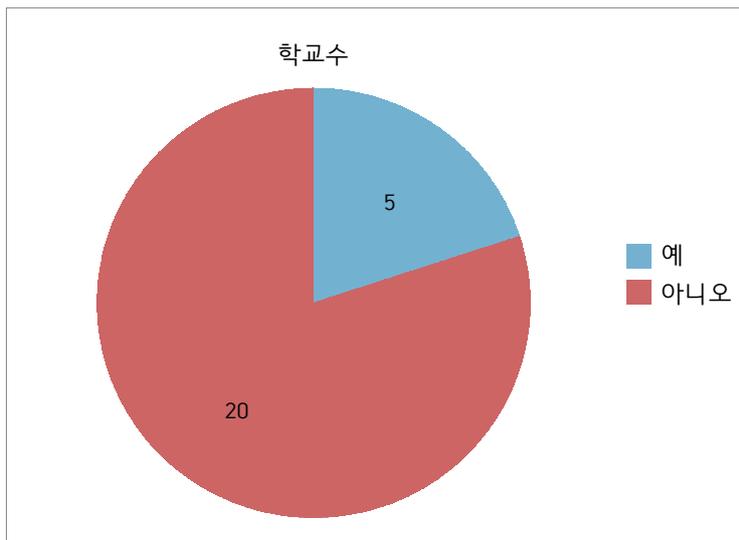
- ①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으로 한정
- ② 특정한 분야로 한정
- ③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활동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법률상담 접수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설문을 통하여 리걸클리닉의 공익성이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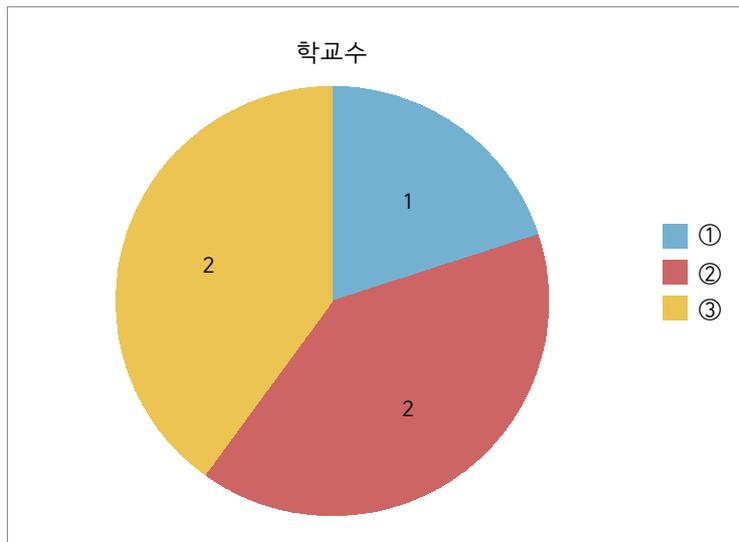
[설문결과]

법률상담 접수기준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5	20



[그림 3-3-1] 법률상담 접수기준 여부

구체적 기준	① (특정계층)	② (특정분야)	③ (기타)
학교 수	1	2	2



[그림 3-3-2] 구체적인 법률상담 기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상담의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걸클리닉의 특성 중 하나로 공익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법률상담을 접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사건을 위주로 법률상담을 접수하는 것과 같은 접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법률상담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계층 혹은 특정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기타의 경우 본교 구성원 혹은 지역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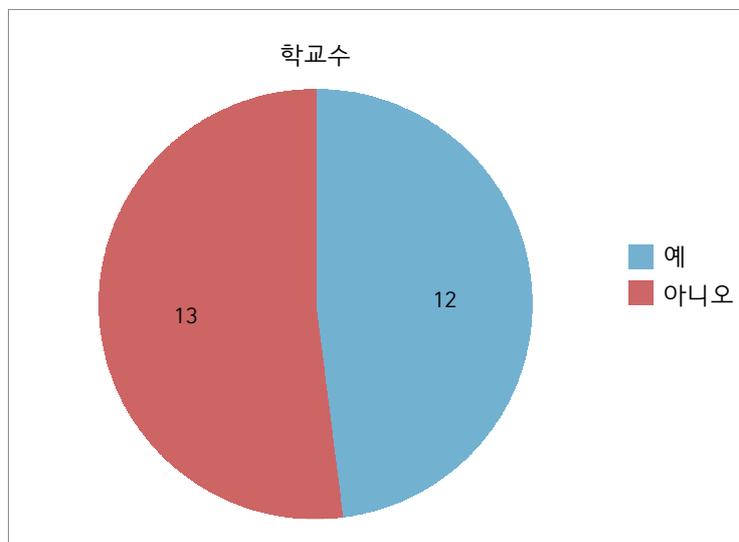
[설문3-4] 귀 학교는 전문 분야의 법률상담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특성화 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곳과 차별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일반적인 법률상담에만 머무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설문결과]

전문분야 상담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12	13



[그림 3-4] 전문분야 상담여부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전문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고 개설되었으며, 대부분 해당

학교의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반 법률상담 외에도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전문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인터넷법, 장애인 인권, 지적재산권, 정신보건, 조세법, 노숙인 인권, 젠더, 의료, 동북아법,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3-5] 법률상담시 답변 전달 형식은 어떠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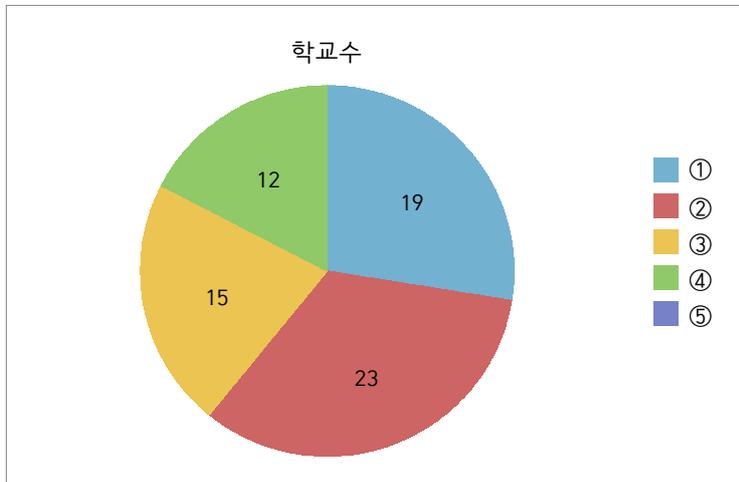
- ① 구두 답변
- ② 의견서 송부·전달
- ③ 법률서면 작성의 지원
- ④ 소송 수행 지원
- ⑤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건의 답변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답변전달 방법	① (구두)	② (의견서)	③ (서면작성지원)	④ (소송수행 지원)	⑤ (기타)
학교 수	19	23	15	12	0



[그림 3-5] 답변전달 방법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구두에 의한 답변제공과, 의견서 제공, 서면작성 지원, 소송수행 지원 등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3-6] 6) 법률상담 절차는 어떠합니까(예 : 학생이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절차와 같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결과]

- 직원이 사건 접수 - 담당교수 사건 검토 - 직원이 상담할 학생 배정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교수의 검토 - 직원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법률상담센터 : 전화, 서면신청접수 - 교수검토 - 학생상담시간배정 - 상담 실시 - 의견 전달 / 외부출장상담 : 접수 - 학생배정(조별로) - 상담 후 의견전달
- 법률상담소 조교 사건 접수 → 담당 교수 검토 및 답변 송부.
법률상담소 조교 실습 사건 선별 → 학생이 연구보고서 작성 → 외부 변호사 검토 및 평가"
- 리걸클리닉 센터에서 사건 접수→ 리걸클리닉 내 법률봉사 동아리 '법과사람사이'에 접수한 사건을 전달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학생이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학생이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직원이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들에게 과제 형식으로 검토, 의견 받음 → 담당 교수가 학생의 답변 검토 및 평가 → 담당 교수가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자문단 검토로 응답(자문단의 구성에 대한 설명 없음)
- 법학연구소 조교들에게 사건이 접수되고 조교들의 지원 아래 법률자문교수들이 자문함.
- 이메일 또는 전화 접수 -> 사전예약 -> 공익법률지원팀원과 교수(또는 자문변호사) 등이 함께 상담건 검토 -> 실제 상담 -> 학생이 상담보고서 작성 -> 작성된 상담보

- 고서로 법률상담원(공익법률지원팀원) 토론회 개최
- 사건접수 -> 지도 변호사 및 상담 학생 배정 -> 상담실시(직접면담 또는 이메일 이용)
-> 상담결과 의뢰인에게 통보 -> 소송 필요시 소송진행-> 상담종료 후 간담회(Case round)
 -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사건 접수→ 학생들이 1차 의견서 작성→ 담당교수의 검토 및 수정→ 완성된 답변서는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법무상담 신청자에게 전달
 - 사건접수 - 법률봉사단 1차 의견서 작성 - 교수 및 외부 변호사 검토 - 의뢰인에게 사건 전달
 - 오프라인 상담·사건접수 → 사건배당(지도교수 . 참여 학생 . 시간 . 장소배정) → 상담의뢰인과의 법률상담(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참여 학생 배석) → 상담의뢰내용에 대한 법률적 쟁점 파악 및 분석 후 보고서안 작성(학생) → 지도교수의 지도 → 최종 보고서 작성(지도교수 및 리걸클리닉센터에 제출) → 상담의뢰인에게 통보
온라인 상담·사건접수 → 사건배당(지도교수 . 참여 학생) → 상담의뢰내용에 대한 법률적 쟁점 파악 및 분석 후 보고서안 작성(학생) → 지도교수의 지도 → 최종보고서 작성(지도교수 및 리걸클리닉센터에 제출) → 사이트에 답변게재
 - 임상법학교육센터 직원이나 지도 교수에게 사건의뢰 →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지도교수(변호사)와 지원한 학생들 6명 정도가 출장상담을 나감 (학생 2명이 한 팀을 구성함) → 지도교수(변호사)의 현장지도 아래 학생들이 법률상담을 참관함.
참관 시 학생들이 정리한 사실관계와 법적쟁점 등을 지도교수(변호사)가 피드백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접수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학생들이 법률상담 참관
 - 리걸클리닉센터 조교 접수 -> 학생이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견서 송부
 - 학생이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상담간사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사건 접수 -> 센터장 및 담당교수의 검토 -> 답변서 전달
인터넷접수 -> 리걸클리닉 담당 조교가 학생들에게 사건 배정 -> 답변시안작성(학생)
-> 질문자에게는 미공개상태로 인터넷상에 게재 -> 교수가 게재된 답변내용을 검토 하고 공개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결정 -> 게재된 답변내용을 질문자에게 공개
 - 사건접수(전화, 방문, 온라인 등) -> 법률상담소장, 전문상담위원, 학생과 함께 1차 면

- 담 -> 리걸클리닉 전문위원 상담 ->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 담당 리걸클리닉 전문 위원에게 위임하여 진행 / 필요없는 경우 관련 의견서 전달
- 리걸클리닉센터 전담직원이 사건 접수 -> 리걸클리닉센터장의 검토 -> 해당전공교수의 법률상담
 - 리걸클리닉 연구원이 사건 접수 -> 센터장(교수)에게 보고 -> 센터장(교수)가 검토 -> 리걸클리닉 활동 학생에게 사건 분배 -> 학생이 사건을 검토한 후 센터장(교수)에게 보고 -> 센터장(교수) 검토 후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을 전달
 - 수강 학생(당직)이 사건 접수 -> 상담일지 및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 학생이 사건 접수 -> 1차 의견서 작성 -> 담당 교수의 검토 -> 학생이 의뢰인에게 답변 전달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설문에 응답한 법학전문대학원 모두는 나름의 사건접수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학교별로 매우 간략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곳까지 그 절차의 정도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통일된 사건접수절차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문3-7] 법률상담활동을 담당하는 교수·외부변호사가 있습니까?

3-7-1) 예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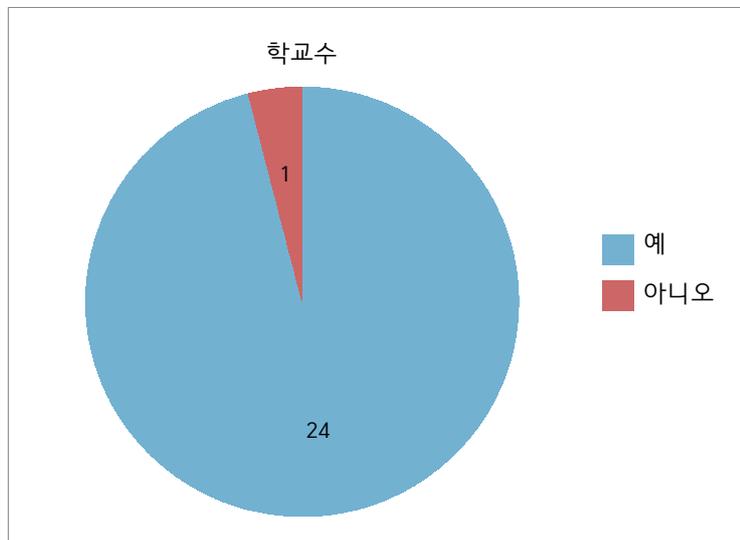
3-7-2) 있다면 그 구성은 어떠합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활동에 배치된 내부 교원 혹은 외부변호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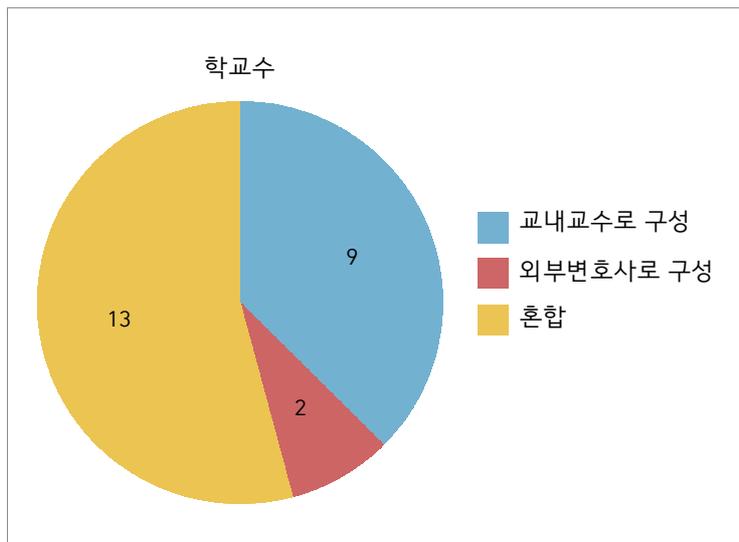
[설문결과]

상담활동담당 교수/외부변호사 배정	예	아니오
학교 수	24	1



[그림 3-7-1] 상담활동담당 교수/외부변호사 배정

상담활동담당 교수/외부변호사 구성	교내교수로 구성	외부변호사로 구성	혼합
학교 수	9	2	13



[그림 3-7-2] 상담활동담당 교수/외부변호사 구성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거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담활동담당 교수 혹은 외부변호사를 배정하여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내교수와 외부변호사를 혼합하여 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내 교수만으로 구성된 곳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의 설문에서의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구성비를 감안할 때 교내교수와 외부변호사가 혼합된 구성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3-8] 상담종료 후 간담회(case round) 등 사건 처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3-8-1) 예/ 아니오

3-8-2)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8-3) 개최 빈도는 어떠합니까?

연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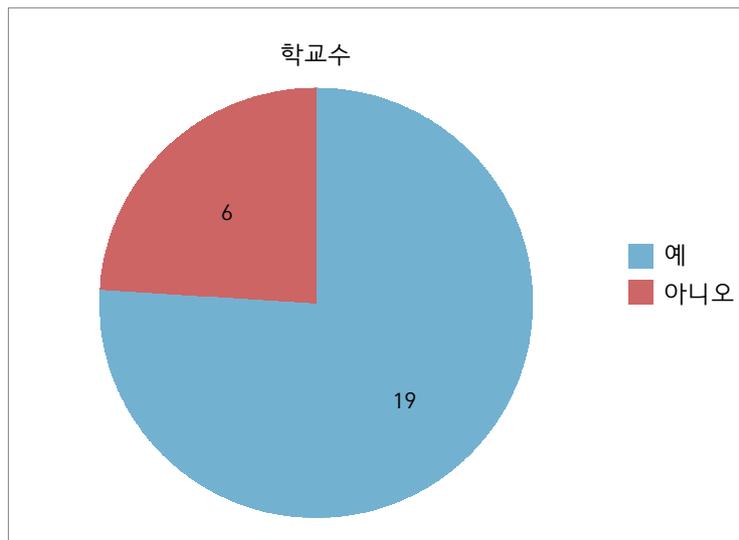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종료 후 해당 내용을 리걸클리닉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설문결과]

- 사건처리 공유여부

사건처리 공유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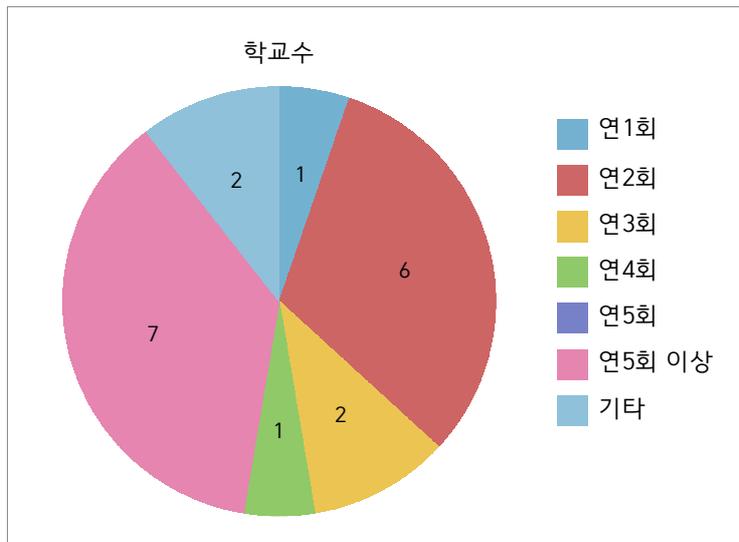
[그림 3-8-1] 사건처리 공유여부

- 공유방식

- 워크샵(1년 1회) 및 간담회(상시)
- 수업종료시 토의, 중간 회식 점검
- 학기종료후 팀별 발표
- 2개월에 1회, 각 학생들이 담당했던 사건들을 발표하고 질의, 토론. 교수들이 함께 참석
- 수업시간 이용
- 소장(실무교원1인)과 팀별 학생들이 의견 교환
- 매달 운영회의에서 상담이 접수되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 하여도 실무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법률상담의 자문위원과의 토론을 통해 실무교육을 극대화하고 있음.
- 학기중 간담회
- 학생들의 토론
- 수업시간 이용
- 간담회
- 세미나
- 세미나
- 법률상담원팀과 담당교수가 세미나실에서 답변문 작성법 및 중요 법리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
- 상담종료 후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외부변호사와 함께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 소송구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각 사건의 답변내용에 관하여 학생들과 함께 토론
- 임상실습과목 시간에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음
- 정기세미나
- 학기당 2회 이상의 운영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미나 1회를 진행하면서 사건처리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개최빈도

개최빈도	연1회	연2회	연3회	연4회	연5회	연5회 이상	기타
학교 수	1	6	2	1	0	7	2



[그림 3-8-3] 개최빈도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그 명칭이나 형태는 상이할지라도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건 종료 후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빈도는 학교별로 상이하였는데 연5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연2회 개최하고 있다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다. 명칭이나 형태의 상이성과 개최 시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는 것은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설문3-9] 9)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사례집 또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까?

3-9-1) 예 / 아니오

3-9-2) 발간하고 있다면 누구를 독자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교내 로스쿨생
- ② 교내 학부생
- ③ 지역 주민
- ④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9-3) 이제까지 발간한 회수는 어떠합니까?

__회

3-9-4) 발간·편집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클리닉 소속 학생
- ② 직원
- ③ 교수
- ④ 기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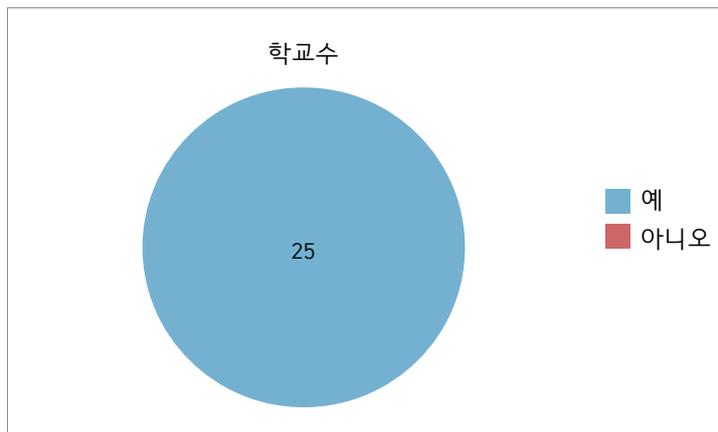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사례집 혹은 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 외부와 공유하는지, 그 경우 대상이 누구인지와 지금까지 몇 회나 발간하였는지, 발간의 편집과 주체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결과]

- 자료집 발간 여부

자료집 발간 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25	0



[그림 3-9-1] 자료집 발간 여부

- 자료집 발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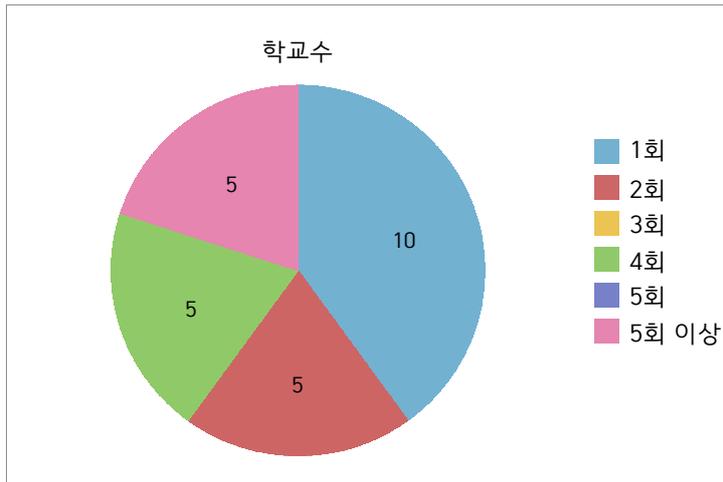
자료집 발간 대상	① (교내 로스쿨생)	② (교내 학부생)	③ (지역 주민)	④ (기타)
학교 수	24	10	10	5



[그림 3-9-2] 자료집 발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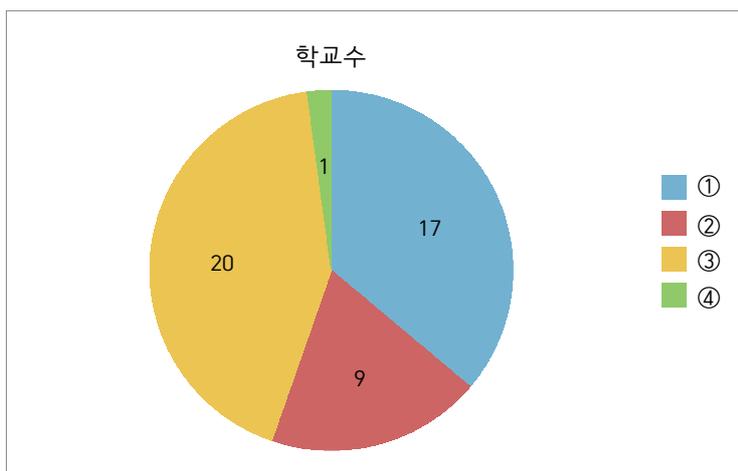
- 발간횟수

발간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5회 이상
학교 수	10	5	0	5	0	5



[그림 3-9-3] 자료집 발간횟수

자료집 발간· 편집 주체	① (클리닉 소속 학생)	② (직원)	③ (교수)	④ (기타)
학교 수	17	9	20	1



[그림 1] 자료집 발간·편집 주체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담사례집 혹은 자료집의 제목으로 상담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상은 대부분 교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이었으나 상당한 비율로 지역주민이나 외부단체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집 발간 횟수는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상이하였는데, 1회 발간한 곳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을 차지한 반면, 5회 이상 발간한 곳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이나 학생들이 자료집 발간 및 편집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고려해본다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사부담이나 변호사 시험의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에 제한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집 발간 대상에서는 기타의 답변으로 MOU 체결기관이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간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자료집 발간·편집주체에서는 기타의 답변으로 별개의 연구센터를 두어 그 곳에서 자료집의 발간과 편집을 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설문4] 교내·외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4-1) 예 / 아니오

4-2) 연계 활동 중이라면 어떠한 단체와 연계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예 : 외부 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 ① 종교기관(성당, 교회, 절 등)
- ②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
- ③ 법무법인
- ④ 사회복지센터
- ⑤ 시민단체
- ⑥ 국제기구
- ⑦ 기타 유관기관(어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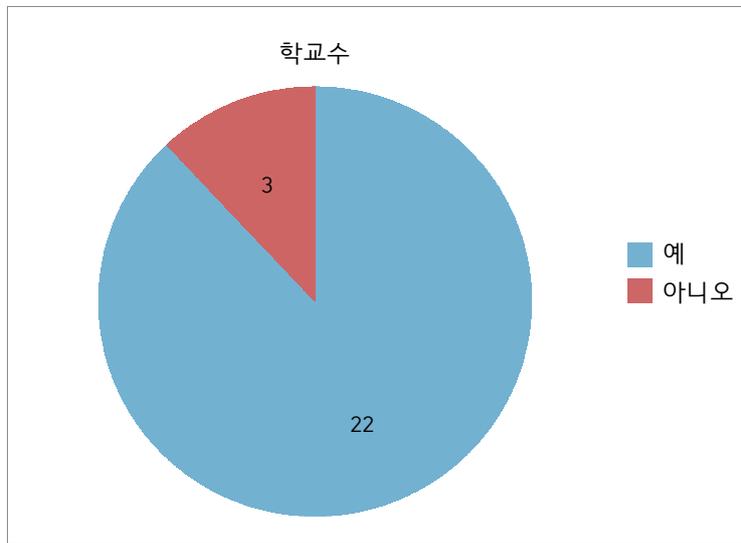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교내·외 여러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리걸클리닉의 공익성을 잘 살려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도 설문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설문결과]

- 교내·외 단체와의 연계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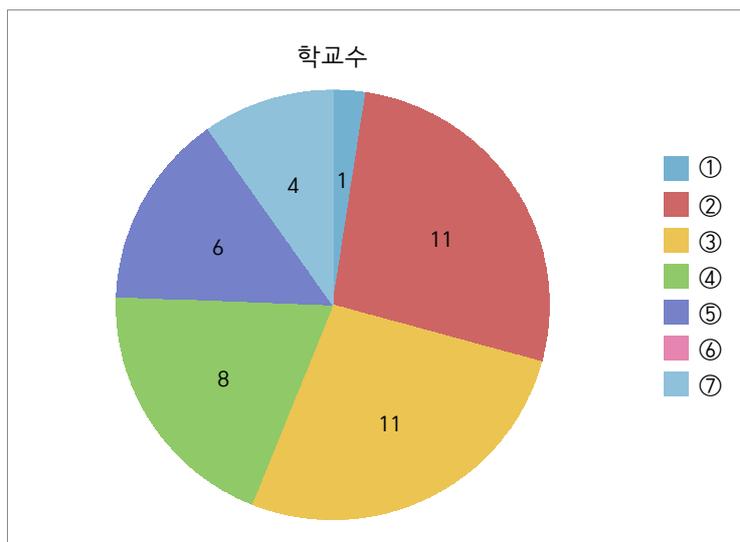
교내·외 단체와의 연계여부	예	아니오
학교 수	22	3



[그림 4-1] 교내·외 단체와의 연계여부

- 연계하고 있는 단체

연계하고 있는 단체	① (종교기관)	② (지자체)	③ (법무법인)	④ (사회복지센터)	⑤ (시민단체)	⑥ (국제기구)	⑦ (기타)
학교 수	1	11	11	8	6	0	4



[그림 4-2] 연계하고 있는 단체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내·외 단체와 다양하게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법인, 사회복지센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종교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하고 있는 단체에서 기타의 답변으로는 MOU를 체결한 단체와 연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설문5] 귀 학교의 리걸클리닉이 다른 학교의 리걸클리닉과 차별화되거나 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활동을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하여, 각 학교가 생각하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설문결과]

- 환경 관련 법률 수요 매칭
- 지역조직이 좋은 성당에서의 출장상담과 적극적 활동
- 타학교와 달리 본교는 법전원 학생들이 전원이 리걸클리닉 법률분쟁실습프로그램 20시간 이수하면서 평균 4건 정도의 실제사건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함. 그리고 공익소송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올바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함.
- 실무출신 교수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외부자문위원 그리고 “법과 사람사이”라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모임이 특히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지역주민 법률상담도 2주에 1회씩 진행.
- 단순한 법률상담만이 아니라, 인터넷법 클리닉, 공익인권 클리닉, 국제인권 클리닉, 노인 인권 클리닉 등 다양한 분과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와 협력
- 전임교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관리
- 본교의 경우 특히 정보가 부족한 금융관련소송 리걸클리닉 강의를 통해 이를 수강생에게 공개하고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리걸클리닉과 차별화된 점을 갖게 된다고 판단됨. 법률상담의 경우 상담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학생들로부터 서약서 받고,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 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재배당하는 등 교육효과 극대화. 상담자에게 상담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 받음
- 우수한 동문들과 연계
- 공익성, 자율성, 헌신성
- 온라인으로 상담신청부터 상담접수, 사건분류 및 배당, 상담실시 등을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중소기업상담

- MOU체결기관 다수, 다양한 수업개설, 공익법률지원사업 등 공모를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
- 특성화 분야
- 특성화, 다양한 수업 개설
- 예술경영센터, 한국연극협회 등과 연계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한 학년의 모든 학생(80명)이 참여한다는 점, 이미 이전부터 활성화 되어있던 교내 상담 소인 법률지원센터로 인하여 최소 120건 이상의 다양하고 풍부한 상담건수, 미리 계획된 연간 상담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 없음
- 없음
- 실질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횟수(2012년 현재 총 6건의 소송구조가 진행 중)가 타 학교에 비해 많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는 지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임상법학교육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을 위한 법률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과 학생들이 실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습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리걸클리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 동계, 하계 방학때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 무변촌지역에서 무료법률상담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
- 국제법무 및 외국인 인권에 특화하여 차별화
- 리걸클리닉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수 정예의 반편성(이렇게 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1년에 학년당 50% 수준만 리걸클리닉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향후 클리닉 반을 증가시켜 나가면 졸업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학기 중 한 건 이상의 실제 공익사건을 개발하여 소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몇 건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음. 리걸클리닉 과정을 전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로스쿨 실무교육의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리걸클리닉 과정에 공통 과정을 도입하여 어떤 과정에 들어오더라도 기초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무변론 무료법률상담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사회 공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특성화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공익 및 인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다른 학교와 차별화 함.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설문에 응답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화하자면,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자원봉사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다는 점, 다른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을 그 강점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강점이 없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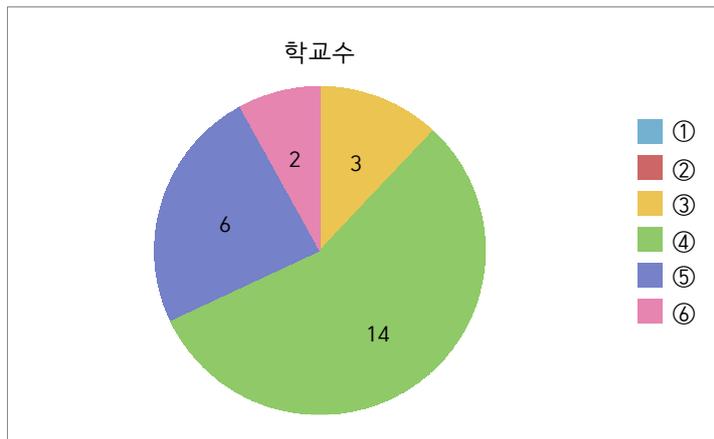
[설문6] 귀 학교의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활동의 참여 정도 및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 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 교육의 대상자이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설문결과]

참여학생 만족도	① (매우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높음)	⑥ (기타)
학교 수	0	0	3	14	6	2



[그림 6] 리걸클리닉 참여학생 만족도

[설문결과 분석]

리걸클리닉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음’ 과 ‘매우 높음’ 이라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0개 곳으로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기타의 답변으로는 만족도를 평가하지 않았거나, 만족도를 모른다는 답변이 존재하였는데, 일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평가해서 이를 피드백하는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제도의 미비라고 판단된다.

[설문7] 귀 학교의 리걸클리닉 운영·발전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귀 학교가 생각하는 리걸클리닉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그간 발생한 애로 사항 내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어떠한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결과]

- 재학생이 직접 대면상담을 하기에는 의뢰인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짐.
개선방안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문성 증진
- 상담사건의 소송전환시 대리인 선정문제와 학생참여문제(학교부설로펌 필요), 전문분야별 교수들의 상담대응 미흡
-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하여 활동 장려 필요
- 사건의 이론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서면작성, 소송 수행 등 법률서비스 제공해야 하며, 상담학생들의 비밀준수의무를 위한 서약서 필요
-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로스쿨 및 국내 로스쿨의 모범 사례를 토대로 명확한 표준을 제시해 준다면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사건수가 적으며, 사건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건이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법률상담에라도 참여하고 싶어도 수업시간 등으로 제약이 따름. 따라서 리걸클리닉을 사건 주제별로 세분화하고 학생 수를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학점 부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 소송 건수 확보가 관건이며, 법률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무적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실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초빙교원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교 내 지위나 재정, 시설 지원에 관한 처우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실제 소송을 다루어야 하는 리걸클리닉의 성격상 외부 변호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임 실무교원들의 경우 여기에 참여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인도

부족하여 전임 실무교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무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제약이 있음

또한 리걸클리닉 첫 수업을 듣고 다음 학기에 이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 초빙교원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고자 하는 강의의 열의를 도출해 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학점, 변시, 취업 등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음. 이에 본교에서는 리걸클리닉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학점수를 2학점으로 늘리고 분야별 전문클리닉을 개설하는 방향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변시, 취업 부담. 리걸클리닉 활동 체계화 등을 통해 취업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 소송사건이 단기간으로 끝나기가 어려워 한 학기 수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재 학생들이 연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 아직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의 날 행사(2012년 10월 5일)를 했으나,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고민해서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애요인 : 리걸클리닉 수업에 적절한 사건 선정,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짐
개선방안 : 변호사협회 등에 정기적으로 협조 요청, 필수과목 지정
- 학사일정으로 인한 부담. 외부변호사 개별적 섭외 어려움. 변호사협회의 공식 지원 및 협력 필요
- 응답없음
- 학사일정 부담. 졸업생과 연계하여 리걸클리닉 운영 필요
- 장애요인 : 2012학년도까지는 리걸클리닉센터장 담당교수의 안식년, 센터장 사직으로 인한 교체로 리걸클리닉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개선방안 : 지재권 특성화를 살려서 가난한 연국인, 예술가 지원을 계획하고, 도서지역 출장 상담을 고려하고 있음

-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실무와 송무경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하면서도 더 다수의 상담사건이 필요함
- 전속 직원 확보
- 상대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업부담이 과중한 상황 아래에서 리걸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어려움. 현재 관련법상으로 학생들이 법정에 설 수 없으므로 기획 소송을 하더라도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적극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산상의 제약이 심각함. 미국의 경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직접 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대륙법 구조 아래에서 미국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보다 많은 학생 참여야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재원이 많이 부족함. 특히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수행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습 차원에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병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큼.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역의 상담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법률고문 및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생들과 함께하는 리걸클리닉의 참여를 반기지만은 않고 있음. 따라서 리걸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실무교수들이 송무활동을 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소송구조가 가능할 것이기에 리걸클리닉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운영초기인 관계로 다소 시행착오가 있으나 국제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 장점에 맞게 리걸클리닉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리걸클리닉 교육의 현실상 실제 소송실무를 적절히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재의 학내교수와 외부 겸임교수 연계방식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의 리걸클리닉과 같이 학내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풀타임 지도 변호사가 상주하는 것이 현실적임. 이를 위해 학내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의 개업제한을 제한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음. 지도 교수의 처우문제가 심각함. 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외부 변호사가 학내 교수로 초빙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교수평가제도로는 유능한 변호사가 학교로 진입하기 어려움. 논문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실무출신 교수들에게는 다른 평가제도가 필요함. 또한 실무교육은 강의실 교육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 향후 리걸클리닉의 평가에서(변협)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모델이 만들어져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구색 맞추기식의 리걸클리닉을 운영할 우려가 있음.
-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변호사 시험 등에 집중하여 리걸클리닉 등 실무파트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요인이며, 리걸클리닉 개선방안은 공동 송무, 무변촌 법률 상담 등을 학점과 연계하여 리걸클리닉 관련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과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리걸클리닉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

[설문결과 분석]

설문결과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다양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유형화하자면 ① 학사일정 내지 변호사시험의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문제가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 역시 이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과, ② 실무교원들이 송무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 ③ 리걸클리닉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곳이 많아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장애가 된다는 점, ④ 보다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펼치려고 하나 리걸클리닉의 홍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⑤ 리걸클리닉 운영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나 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그 대안으로는 ① 학사일정 개편 혹은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② 실무교원들로 하여금 리걸클리닉 교육에 한해 송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실무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평가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③ 리걸클리닉 전담 직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혹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④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리걸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리걸클리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들고 있다.

제3절 리걸클리닉 운영상의 문제점

I. 문제의 제기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걸클리닉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II. 리걸클리닉 운영상의 문제점

1. 졸업요건 또는 필수과목으로의 채택 여부

여타 실무실습과정 또는 과목(이하 ‘여타 실습’이라 한다)과 리걸클리닉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협의의 리걸클리닉은 원생들이 실제 사건을 다루어 그로부터 실전경험을 통한 학습을 하는 점에서 가상의 사건을 다루는 모의재판 등과 다르다. 실제사건은 원생들로 하여금 고도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지식은 오래 지속되며, 실전경험은 장차 변호사를 함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의 연수는 비록 실제 사건인 점에서는 같으나, 그 사건의 처리주체가 외부기관이어서 원생들은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서 그로부터 얻는 경험이 간접적인 반면, 리걸클리닉은 원생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어 그로부터 얻는 지식과 경험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외부기관에서의 연수가 방학중 1주 또는 2주 등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그로부터 얻는 경험이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반면, 리걸클리닉은 한학기 또는 1년 동안 실제 사건의 처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원생들이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경험은 체계를 갖춘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제 송무사건의 경우 한 심급의 시작부터 끝까지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를 제기한 원생들이 판결확정시까지 지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외부기관의 연수에 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경험을 집적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 과정의 수행은 원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할 필수적인 코스이다. 그러나 [설문1-2 내지 3]의 결과에 의하면 리걸클리닉 활동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비율이 거의 48:52으로 나타나고 있고,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12%(3/25)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과 달리 이론 및 실무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교육은 병행되어야 하고, 그 중 실무교육을 위하여서는 리걸클리닉 과정의 이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리걸클리닉 교육을 졸업요건이나 필수요건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히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대학원생들은 당장 급한 학점 취득 및 변호사 시험 합격에 대다수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실무교육, 그 중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리걸클리닉 과목의 이수에 대하여는 더욱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으며, 각 학교 간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경쟁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리걸클리닉 과정 이수를 통한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서는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1학년 2학기부터 또는 2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년간 일정한 학점 이상(2강좌 정도, 학점으로는 4-6학점 정도)를 이수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리걸클리닉의 전문화 문제

앞의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상이한 특성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 리걸클리닉 활동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상담에만 그치는 것은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설의 목적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더하여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다양한 특성화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해당 특성화 과정과 연계된 리걸클리닉 교육이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생생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특성화 과정과 연계된 리걸클리닉 활동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본교 리걸클리닉의 강점이 특성화된 분야의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문에서 응답하고 있는 것과 리걸클리닉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특성화 과정과 연계된 리걸클리닉 활동을 개설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현재 설문조사 결과 전임교원과 외부변호사가 리걸클리닉 과목의 교육을 분담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리걸클리닉 교육 담당 교원을 전임교원만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외부변호사만으로 구성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리걸클리닉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임교원과 외부변호사가 분담하여 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리걸클리닉 전담교수를 두어 행정적 일관성과 계속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재정적 구조가 취약한 우리 로스쿨(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하에서는 학교의 전임교원과 외부의 전문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한 리걸클리닉의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의 경우에 학생, 외부변호사와 연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전임교원의 변호사활동의 제한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제도로는 전임교원에게만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게 할 경우 송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리걸클리닉 교육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외부변호사에게만 교육을 맡길 경우 외부변호사는 본업이 있는 결과 원생들의 교육과 공익사건에 집중할 수 없으며, 원생들을 사건처리의 보조적 위치에만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과 외부변호사가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임교원의 송무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재고하여야 한다. 전임교원의 외부활동의 제한은 교수평가에 있어서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는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를 소폭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에 로스쿨 시행 초창기에 일부 연한의 기존의 전임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었지만 전임교수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대학원생들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의뢰인과 상담하며, 그러한 상담결과를 법률의견서 또는 소송서류로 작성하고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일을 전임교원이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전임교원과 원생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데,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외부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이 경우 의뢰인과 별 상담 없이, 또는 증인신문 등을 함에 있어서 별 준비도 없이 임하게 되어 소송과정에서 실수 또는 불리한 소송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임교원이 리걸클리닉 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직접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일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리걸클리닉을 통한 소송진행 중 외부변호사의 해당사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증인신문시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문제가 간혹 발생하였다. 이 경우 리걸클리닉을 이용한 해당 의뢰인으로부터의 불만 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리걸클리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나아가서는 교육기능과 공익적 봉사라는 리걸클리닉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주관하는 원생들과 전임교원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여 송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적어도 리걸클리닉 담당 교수는 법정에서 출석하여 소송 수행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재정지원의 문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리걸클리닉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열악한 재정의 문제를 꼽고 있었다. 보다 다양화된 활동을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여 하고 싶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고, 재정문제로 인해 리걸클리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법학전문대학원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은 기존의 법률상담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기관이며,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으로서 임상법으로서의 리걸클리닉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종래의 법률상담소가 행하여오던 미시적인 법률구조사업 외에도 보다 진전된 거시적 관점에서의 법률구조사업까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재정상의 문제로 리걸클리닉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

이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성패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실무교육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국가차원에서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재정지원을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1959년에서 1978년 사이에는 포드재단에서 리걸클리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나⁹⁸⁾, 1978년부터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재정지원을 담당하여 1978년에서 1997년까지 매년 605,000달러에서 15,000,000달러를 지원하였고, 총 87,134,000달러를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변호사법 제1조), 단순히 개인적인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변호사법 제2조)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는 상당한 정도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변호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리걸클리닉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그 외의 문제

그 외, 설문에 응답한 법학전문대학원은 ① 학생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학사일정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와 ② 리걸클리닉의 홍보부족으로 대상사건을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③ 정형화된 사건접수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④ 시민단체 혹은 지역의 상담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문제, ⑤ 전임교수의

98) 포드재단이 지원한 액수는 1959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19개 로스쿨에 500,000달러, 1965년에 950,000달러이며 1968년에서 1978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11,000,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열의에 따라, 또는 학교의 지원에 따라 리걸클리닉의 교육의 질과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각 학교가 로펌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제4절 소결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을 25개 로스쿨에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i) 리걸클리닉의 필수과목 채택 여부, ii) 리걸클리닉의 전문화 문제, iii) 리걸클리닉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iv) 재정지원의 문제 v) 그 외의 문제 등이 존재함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운영현황으로부터 도출된 문제는 제4장의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4장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제1절 서론

리걸클리닉 교육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로스쿨 교육이 소크라테스식 케이스 분석방법(Socratic Case Method)을 중시하여 교실강의로 치우치는 것을 비판하면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술(skills)과 가치(values)를 함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959년 포드재단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시작되어, 1978년 이후에는 클리닉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미국 교육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 졌다. 현재에는 UNDP, 포드재단, 록펠러 형제 재단 등이 나서 리걸클리닉을 새로운 법학교육방법 및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등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면 리걸클리닉 교육은 로스쿨 뿐만아니라 법학교육의 새로운 교육방법이고, 또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가진 교육임이 명백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무대(UN 등 국제기구, 외국 로펌), NGO 등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지도자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도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하여 공적 책임감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향후 발전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잡으려 한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실습과정’의 개념을 리걸클리닉의 일반적 개념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광의의 리걸클리닉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제5항 제4호의 모의재판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습과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i) 협의의 리걸클리닉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배우는 교육과정, ii) 광의의 리걸클리닉인 학생들이 학교 밖의 기관에 파견되어 외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학습하는 현장학습과정인 엑스턴쉽(externship)과 인턴쉽 등의 과정, iii) 최광의의 리걸클리닉 중 모의재판을 제외한 로이어링(lawyering) 또는 모의과정(simul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밖의 기관에 파견되어 외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학습하는 현장학습과정인 엑스턴쉽(externship)과 인턴쉽 등의 과정, 모의재판은 해당 기관과 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이 담당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위 i)과 iii)의 개념에 집중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리걸클리닉 교육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절 한국 리걸클리닉의 특별한 사정

I. 서론

리걸클리닉 교육은 교육방법으로서의 일반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것이 시행되는 곳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인종이 매우 다양하고, 각 주마다 법제도 등이 차이가 있고, 영토가 넓고 많은 로스쿨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제도, 인종도 단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조인의 양성 방식이 신사법시험제도 하에서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등의 경우에는 법의 지배 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리걸클리닉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

II. 한국의 특별한 사정

1. 구성원의 연대의식이 높음

한국은 인구, 영토, 제도 등의 면에서 미국과 달리 매우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종전에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으로 법조인 사이의 연대의식이 일본, 미국 보다 강하였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은 종전과 달리 다양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 구성성의 동질성은 국가 전체적으로 평등의식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갖게 되었고, 법조인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법률가 사이에 경쟁과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에서 인턴십 교육 등이 미국, 일본 등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쉽게 조성되었고, 본 용역에서 집중하여 분석하는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하여 공적 의무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쉽게 합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교육열이 유난히 높다는 점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유태인에 뒤지지 아니할 정도로 유난히 높다. 이러한 정서는 비판적 시각은 있지만 해방 이후에 법조인들이 쌓은 직업적 신뢰 등이 합쳐진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직업으로 판단되는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다양한 인재가 로스쿨을 거쳐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회, 국제기구 등 사회적·국가적·세계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다. 로스쿨에서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법 중에 리걸클리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하여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스스로 공적 의무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공적 의무를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국가적 발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종전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배출된 인재들과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을 로스쿨에서 교육하여 국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게 된다.

3. 법률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우리 법률시장 전체의 규모가 정확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지만 미국의 가장 큰 로펌의 1년 매출과 같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의 규모가 미국, 유럽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법률이라는 것이 일반 서비스와 달리 공적 기재로서 법률시장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률의 제정·집행·해석 등의 업무는 국가의 전체 체제의 골격을 잡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시장규모는 적지만 법조인의 양성을 단순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의 법조인으로 유입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법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리걸클리닉 교육의 강화, 전문화 등을 통하여 공적 의무감을 높여 공적 분야인 법원, 검찰,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통한 공적 영역으로 진출 강화, 국제기구 및 외국 로펌 등으로의 직역을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성이 있다.

4. 국가 발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결국 인재로서 승부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삼성, 현대, SK 등 세계적 기업 또는 도약 중인 기업이 많고, 이러한 기업의 해외진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법률가의 책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은 국내 기업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매우 높다. 이것은 로스쿨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한 전문화 등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Ⅲ. 소결

위 1. 내지 4.의 사정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리걸클리닉의 구체적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3절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I. 서론

한국 리걸클리닉은 제3장 한국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에서 살펴본대로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나름대로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은 어떻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리걸클리닉 교육의 개념과 한국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간단할 수도 있다.

그것은 미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이 지향하는 목표에 한국 리걸클리닉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현재의 리걸클리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1.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확대 및 강화

원래 미국의 리걸클리닉의 목표는 로스쿨에서 i) 학생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실무교육의 강화, ii)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익활동의 활성화(공적 의무감 부여)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필요한 실무교육 보다는 토론 위주의 케이스라는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법률가의 사회참여 등이 그 동기가 되었다. 리걸클리닉 교육은 이러한 동기에 비롯되어 시작되었는데 포드 등의 기업과 미국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미국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에 매우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리걸클리닉 교육은 우리나라가 2009년 3월에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리걸클리닉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리걸클리닉의 뿌리는 미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이고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된 곳 또한 미국 로스쿨이므로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리걸클리닉 교육의 1차적 목표를 i) 학생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실무교육의 강화, ii)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익활동의 활성화(공적 의무감 부여)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위 제2절에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에 iii) 전문성 강화, iv) 취업과 연계된 실무교육의 강화를

추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 iii)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리걸클리닉을 특허, 공정거래, 입법제정, 조세, 국제기구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리걸클리닉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을 구체화 하여 해당 관련과목을 현재의 케이스를 통한 임상법무실무이나, 로이어링(lawyerling) 또는 모의과정(simulation)의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턴십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위 iv)의 취업과 연계된 실무교육의 강화도 위 i) 내지 iii)의 교육에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전담교수와 연계한다면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리걸클리닉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국제인권사건이고 담당교수가 UN에서 한국에 주재원인 변호사가 겸임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면서 국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방학 중에는 해당 교수의 추천으로 UN에 엑스텐십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여러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국제인권 사건을 다루었다면 그 학생은 자연스럽게 UN 등의 국제기구에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걸클리닉 교육이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리걸클리닉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리걸클리닉의 일반성과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리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를 i) 학생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실무교육의 강화, ii)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익활동의 활성화(공적 의무감 부여), iii) 전문성 강화, iv) 취업과 연계된 실무교육의 강화로 목표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의 당연한 결과로 리걸클리닉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에 있어서의 리걸클리닉은 위 i) + ii)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은 전임교수, 외부 변호사 등과 연계한 법률 상담업무가 이것과 연계된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의 개설로 이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비교적 자리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의 경우에도 공익법률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일반법률상담 클리닉 외에 공익인권클리닉, 국제인권클리닉, 인터넷법클리닉, 국제인도주의법클리닉, 노인인권클리닉, 사회적기업클리닉 등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클리닉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 리걸클리닉의 목표와 관련하여 위 i) + ii)의 목표 외에 전문성과 취업연계를 위한 위 iii) + iv)의 목표 등을 위한 특허, 공정거래, 입법제정, 조세, 국제기구 등의 전문성과 취업연계 리걸클리닉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인증교육과 연계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리걸클리닉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해당 로스쿨의 전임교수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 등과의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 달성해 나가야 하고, 해당 로스쿨의 전문인증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면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로스쿨 마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게 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법률시장이 좁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을 줄일 수 있고, 법률가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 리걸클리닉 교육의 졸업요건 또는 필수과목으로 채택요망

리걸클리닉 교육이 로스쿨에 있어서 i) 학생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실무교육의 강화, ii)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익활동의 활성화(공적 의무감 부여), iii) 전문성 강화, iv) 취업과 연계성 등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제3장 제2절의 리걸클리닉 운영현황에서의 [설문1-2 내지 3]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리걸클리닉 활동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가 전체의 52%에 해당하고, 졸업요건으로 한 학교 42% 중 일부만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로스쿨 중 졸업요건으로 한 학교는 12%(3/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것은 현재 로스쿨의 수업이 매우 빠빠하게 짜져 있고,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시험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자체에서도 리걸클리닉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로-클릭, 검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 예견되므로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공적 책임감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리걸클리닉을 통한 법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 과정에 일정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교육 시기는 미국 등의 예와 전문성, 취업연계 등을 고려하여 1학년 2학기부터 기초적인 법률상담 등의 교육을 받게 한다면, 이후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할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리걸클리닉 교육은 관련 임상법무실습 또는 리걸클리닉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방법과 해당 로스쿨의 법률상담소에서의 일정한 시간 이상의 클리닉 활동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클리닉 활동을 통한 학점 부여는 해당 로스쿨의 법률상담소의 소장, 담당교수 등의 지도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부여 학점은 학기 당 학교에 따라 1~3학점을 주고 있는바, 해당 로스쿨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4. 국가의 재정지원의 강화

리걸클리닉 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내용의 공공성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리걸클리닉 교육은 원래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실무교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익활동의 강화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리걸클리닉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공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특히 법률가들이 다루는 법률의 제정, 해석, 집행 등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교육부에서도 1978년부터 중전에 포드재단에서 지원하던 재정을 직접 지원하여 리걸클리닉 교육이 현재 미국 로스쿨에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로스쿨 졸업자들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할 역할 등에 비추어 공공성이 매우 강한 리걸클리닉 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되는 법률가들이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하여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법률로 도우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게 한다면 자신의 공적인 의무를 자각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자신의 공적 의무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법학 교육방법의 혁신을 통하여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방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리걸클리닉 교육은 교육방법의 면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인 법학교육이 강의실에서 교수 중심으로 실시되던 ‘죽은’ 교육이라면, 리걸클리닉 교육은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살아 있는’ 교육이다. 리걸클리닉 교육에서는 학생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다른 학생들과 ‘협력적으로’ 학습하며, 의뢰인과 ‘의사소통하며’ 학습하고, 주기적으로 실습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반성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과거 강의실 중심의 교육의 전형이었던 법학이 교육방법의 혁신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인다면, 이러한 사례는 인접 학문의 교육방법의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리걸클리닉 교육은, 교육내용의 공공성과 교육효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이 선뜻 나서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리걸클리닉 교육에서는 교수가 학생의 모든 활동을 직접 지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수대 학생비율이 일반 강의식 수업보다 더 낮으며, 실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고인 또는 증인을 면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 및 숙박비가 많이 들고, 개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도 많아 자문비가 들게 된다.

로스쿨의 운영을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심각한 적자구조이므로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하여도 여기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구조임이 현실이다. 적어도 로스쿨 재정의 경제성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리걸클리닉 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리걸클리닉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계속 유지

우리나라는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하였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로스쿨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실무가들을 전임교수로 영입하여 실무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변호사 자격 있는 실무 출신 전임교수들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출신 전임교수들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실무출신 교수들은 교수로 오기 전에 이론출신 전임교수들과 달리 개별적 사건의 처리에는 숙달되어 있지만 학문적인 업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학문적 업적도 실무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이론적 토대를 쌓아가야 함에도 실무를 할 수 없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무의 감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다 보면 로스쿨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로 왔던 실무 출신 교수들이 다시 실무로 복귀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실무출신 교수들이 학교로 진출한 것은 공부를 하고 싶어 온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변호사 업무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성격상 최소한에 그칠 것이고, 로스쿨의 업적평가를 리걸클리닉 등의 실무교육을 전담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기준을 낮추어 준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무가 출신의 교수들의 변호사 업무제한을 풀다고 하여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로스쿨에 있어서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본다면 리걸클리닉 전담 교수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출신 교원의 뿌리가 되는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리걸클리닉 교육이 활성화되고, 사법시험에 따른 사법연수원 교육이 끝나는 2019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사사건 외에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등을 로스쿨 2-3학년 학생들이 맡아 공익활동을 하여야 되는 사정을 생각한다면 실무출신 교원의 변호사 업무를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변호사 활동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교수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이것이 로스쿨의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6. 가칭 리걸클리닉 협회의 설립 필요성

리걸클리닉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설립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리걸클리닉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잡고, 또한 외국과의 리걸클리닉 관련 교육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리걸클리닉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걸클리닉 교육은 우리나라 법학계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담당교수들끼리 교류하면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리걸클리닉 교육의 정착에 협회의 설립 및 발전이 기여한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CLEA(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SALT(Society of American Law Teachers), AALS(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의 클리닉 분과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2008년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임상법학교육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학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로 「법조양성과 임상교육」을 발간하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동 학회 제3회 연차대회에서는 ‘동아시아에 있어 법조양성과 임상법학교육-일중한의 현상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2002년 7월 28일 중국임상법학자협회(Chinese Clinical Legal Educators Committee, CCLEC로 약칭)가 설립되어 현재 14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CCLEC는 2012년 11월 24-25일 북경 인민대학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걸클리닉 교수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컨퍼런스(Agenda for 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LEC)를 UNDP와 공동 주최한 바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대한민국 리걸클리닉 협회(Korea Legal Clinic Committee)를 설립하여 각 학교가 운영하는 리걸클리닉을 중심으로 토론, 연구 등을 학회 또는 세미나 형태로 하여 책자 등을 발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7. 기타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i) 해당 로스쿨 소속의 법률회사의 인정, ii) 리걸클리닉 전담교수의 채용 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 해당 로스쿨 소속의 법률회사의 인정의 문제는 다른 변호사와의 업무 충돌 또는 일본 등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이 없어 학교 또는 지역 변호사협회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등과 충분한 논의 후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후에 리걸클리닉 교육이 활성화 되어 형사사건의 변론도 로스쿨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가능할 때에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ii) 리걸클리닉 전담교수의 채용 등의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Ⅲ. 소결

이상에서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리걸클리닉 기본개념과 리걸클리닉이 지향하는 기본목표에 한국 리걸클리닉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현재의 리걸클리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본 용역에서는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확대 및 강화, 리걸클리닉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리걸클리닉 교육의 졸업요건 또는 필수과목으로 채택요망, 국가의 재정지원의 강화, 리걸클리닉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계속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본 용역에서는 “한국 리걸클리닉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1장 서론에서 전체의 서술방향을 잡았다.

제2장에서는 리걸클리닉의 개념 및 발전, 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의 일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리걸클리닉의 개념과 역사, 제3절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표, 내용 등, 제4절 ‘소결’ 등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 제3절 리걸클리닉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4절 소결 등으로 검토하였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리걸클리닉의 특별한 사정, 제3절 한국 리걸클리닉의 향후 발전방안, 제4절 소결 등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한국 리걸클리닉 교육이 한단계 더 발전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김인회, 문재완, 정한중, 「로스쿨 실습과정(리걸 클리닉 익스텐션)」, 한국학술정보, 2011.

〈논문〉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3편」 제2호.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에서 배우는 임상법학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법학논집 제24편」 제3호.

서울오,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특징”, 법과사회, 2007.

손미숙, “법학인가, 맥로(McLaw)인가?”, 법조, 2007.

이국운, “박경신,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법과 사회, 2000.

전해정, “미국 임상법학 교육방법 이론과 실제 -가정폭력 클리닉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미국 로스쿨 실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 “, 2005.

Shigeo Miyagawa,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Japan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2012.3.31.

2. 외국문헌

(1) 미국문헌

〈단행본〉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 EDUCATIONAL CONTINUUM* (1992).

Chavkin, David F. *CLINICAL LEGAL EDUCATION* (2002).

Falcone, Michael, *Stanford Law Students Get Early Supreme Court Duty*
(15 March 2006).

Friedman, Lawrence M., *A HISTORY OF AMERICAN LAW* (2001).

Menon, Madhava, N.R., *CLINICAL LEGAL EDUCATION*, Reprinted (2008).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ING BY THE BOOK*, (2005).

Schrag, Philip G. & Meltsner, Michael, *REFLECTIONS ON CLINICAL LEGAL EDUCATION*
(1998).

Stuckey, Roy et. al., *BEST PRACTICES FOR LEGAL EDUCATION* (2007).

Sullivan, William M., et. al., *EDUCATING LAWYERS* (2007).

Wightman, Linda F., *LSAC National Longitudinal Bar Passage Study viii* (1998).

〈논문〉

Barry, Margaret Martin, et. al., *Justice Education and the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of Study Performance in Legal Clinics Workshop
(July 2004).

Barry, Margaret Martin, Dubin, Jon C. & Joy, Peter A.,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 L. Rev. (2000).

Charn, Jeanne, *Service and Learning: Reflections on Three Decades of the Lawyering
Process at Harvard Law School*, 10 Clinical L. Rev. (2003).

Dunlap, Justine A. & Joy, Peter A., *Reflection-in-action: Designing New Clinical Teacher
Training by Using Lessons Learned From New Clinicians*, 11 Clinical L. Rev. (2004).

Fell, Norman, *Development of A Criminal Law Clinic: A Blended Approach*, 44 Clev. St.
L. Rev. (1996).

Frank, Jerome, *Why Not a Clinical Lawyer-School?*, 81 U. Pa, L. Rev. (1933).

Grosberg, Lawrence M., *Should We Test for Interpersonal Lawyering Skills?*, 2 Clinical L.
Rev. (1996)

Holland, Laura G., *Invading the Ivory Tower: The History of Clinical Education at Yale
Law School*, 49-4 J. Legal Educ. (December 1999).

Johnstone, Quintin, *Law School Clinics*, 3 J. Legal Educ. (1951).

Ogilvy, J.P. “Sandy“, *Celebrating CLEPR ‘s 40th Anniversary: The Early
Development of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Legal Ethics Instruction in U.S. Law
Schools*, 16 Clinical L. Rev. (2009).

Joy, Peter A., et. al., *Building Clinical Legal Education Programs in a Country Without a Tradition of Graduat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Japan Educational Reform as a Case Study*, 13 Clinical L. Rev. (2006).

Joy, Peter A. & Kuehn R., *The Evolution of ABA Standards for Clinical Faculty*, 75 Tenn. L. Rev. (2008).

Kreilling, Kenneth R., *Clinical Education and Lawyer Competency: The Process of Learning to Learn from Experience through Properly Structured Clinical Supervision*, 40 Md. L. Rev. (1981).

Law Schoo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2006 Survey Results* (2006).

Lyublinsky, A., *About Legal Clinics*, Journal of Ministry of Justice(Russia), (January 1901).

Millemann, Micheal A.& Schwinn, Steven D., *Teaching Legal Research And Writing With Actual Legal Work: Extending Clinical Education into The First Year*, 12 Clinical L. Rev. (2006).

New York State Judicial Institute, PARTNERS IN JUSTICE: A COLLOQUIUM ON DEVELOPING ON COLLABORATIONS AMONG COURTS, LAW SCHOOL CLINICAL PROGRAMS AND THE PRACTICING BAR, Introduction to Clinical Legal Education (2005).

Robert Dinerstein, et 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the In-House Clinic*, 42 J. Legal Educ. (1992).

Rowe, William V., *Legal Clinics and Better Trained Lawyers-A Necessity*, 11 Ill. L. Rev. (1917).

Sandefur, Rebecca & Selbin, Jeffrey, *The Clinic Effect*, 16 Clinical L. Rev. (2009).

THE LEGAL CLINIC FOUNDATION, *THE LEGAL CLINIC: THE IDEA, ORGANIZATION, METHODOLOGY* (2005).

Wizner, Stephen, *Beyond Skills Training*, 7 *Clinical L. Rev.* (2001).

(2) 일본문헌

浦川 道太郎,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の現状”, 日韓法学会 第5回 共同シンポジウム (2006.8.26.) 『日韓両国におけるロースクールの理念と題』 주제발표문.

(3) 중국문헌

<단행본>

汪世榮 主編, 有效的法學實踐教育, 法律出版社, 2012年 5月.

中國社科院法學研究所., 中國法治發展報告No.7(2009)[M].,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年.

韓桂君, 診所法律教育模式研究, 中南財經政法大學教育思想觀念大討論論文叢萃, 吳漢東 主編, 北京大學出版社, 2006年.

<논문>

石賢平, “診所法律教育在高等法律職業教育具體應用中的問題與對策”,

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CLE., 2012年.

劉英, “大學院生診所法律教育的可行性探討”, 2012 Asia-Pacific Forum o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nnual Meeting of CCCLE., 2012年.

李正新, “ 試論法學教育的臨床培養--診所法律教育本土化困境及其應對”, 教育法制, 2012年第2期.

Zhen, Zhen, *Clinical Legal Education in China, Current Situation and Its Future of China's Clinic Legal Education*, Papers for Experiential Education Conference (2009).

(4) 독일 문헌

Jeep, Bologna, *Stärken bewahren, Chancen nutzen*, JZ, 2006.

Goll, Das “*Stuttgarter Modell*“ der *Juristenausbildung*, ZRP, 2007.

4. 참고 사이트

Berkeley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berkeley.edu/clinics.htm>>.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cleaweb.org/new_clinicians_handbook_2009.pdf> .

Columbia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columbia.edu/focusareas/clinics>> .

Havard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faq.html>>.

Havard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students/continuing.html>.

Harvard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clinical/students/independent.html>.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ät Home Page, 26 Dec. 2012

<http://lawclinic.rewi.hu-berlin.de> .

Juristische Fakultät-Legal Clinic-Juristische Beratungspraxis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uni-hannover.de/legalclinic.html> .

Juristische Fakultät-Weitere Information Home Page,

<http://www.jura.uni-hannover.de/1500.html> .

Kansai University Law School Home Page, 07 Jan. 2013

<http://www.kansai-u.ac.jp/lis/about/nakanoshima.html>.

Media law Clinic-Fakultät für Rechtswissenschaft-Universität Hamburg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uni-hamburg.de/medialawclinic/>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nyu.edu/academics/areasoffocus/clinics/index.htm> .

Ritsumeikan University School of Law Home Page, 07 Jan. 20

http://www.ritsumei.ac.jp/acd/gr/hoka/special_legal_clinic120601.htm .

Stanford Law School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law.stanford.edu/clinics> .

Studium-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uni-freiburg.de/studium/ersteStaatexamen/hauptstudium/.](http://www.jura.uni-freiburg.de/studium/ersteStaatexamen/hauptstudium/)

The New York Times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nytimes.com/2006/03/15/education/15stanford.html>.

Universität Düsseldorf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hhu.de/en/hilfe/faq.html>〉 .

Universität Düsseldorf: Legal Clinic Home Page, 5 Jan. 2013,
〈<http://www.jura.hhu.de/en/hilfe.html>〉 .

Universität: Prof. Dr. Diederich Home Page, 5 Jan. 2013,
〈www.eckardt.uni-trier.de〉 .

Yale Law Home Page, 23 Dec. 2012
〈<http://www.law.yale.edu/admissions/studyoflawatyls.asp>〉.

Waseda Law Home Page, 26 Dec. 2012
〈<http://www.waseda.jp/law-school/jp/about/education/clinic02.html>〉 .

University of Washington of Law Home Page, 07 Jan. 2013
〈<http://www.law.washington.edu/Clinics>〉 .